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이민청 톺아보기**

3차 경제 활력 제고와 내·외국인의 사회통합 촉진

일 시 2022. 9. 30.(금) 10-1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주최·주관 | 조정훈 의원실 법무부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MRTC

공동주최 | 기동민 의원실, 김형동 의원실, 류호정 의원실, 유상범 의원실, 윤재갑 의원실, 이명수 의원실, 이탄희 의원실

PROGRAM

■ 개요

○ 일시: 2022. 9. 30. (금) 10시~ 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 주최/주관: 국회의원 조정훈,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 공동주최: 국회의원 기동민, 김형동, 류호정, 유상범, 윤재갑, 이명수, 이탄희

■ 일정

시간	내용	담당
09:30~10:00	등록	
10:00~10:15	개회식	사회: 조영희 연구교육실장 (이민정책연구원)
	참석자 소개	
	개회사	국회의원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환영사	강동관 원장(이민정책연구원)
	축사	공동주최 국회의원
	기념촬영	
10:15~10:45	세션1 : 발표	
	발제1. 외국인력 활용의 경제적 효과와 중장기 외국인력 수요 전망	이상돈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발제2. 선·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이민자에 대한 인식 개선	장주영 부연구위원 (이민정책연구원)
10:45~11:45	세션2 : 토론	좌장: 윤인진 교수 (한국이민학회장, 고려대학교)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자 유입·활용의 바람직한 정책 제안	장영욱 유럽팀 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하경희 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톤숄츠 기자 (독일방송 프리랜서)
		류병균 상임대표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정영섭 사무국장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윤현규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국민참여단)
		강병석 강사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국민참여단, 서정대학교)
11:45~12:05	자유토론 및 Q&A	
12:05	폐회식	

Contents

개회

- 개회사 :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3
- 환영사 :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원장 5
- 축 사 : 공동주최 국회의원 7

발제1 : 외국인력 활용의 경제적 효과와 중장기 외국인력 수요 전망

- **이상돈**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19

발제2 : 선·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이민자에 대한 인식 개선

- **장주영** 부연구위원(이민정책연구원) 37

토론

- **장영욱** 유럽팀 팀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51
- **하경희** 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54
- **안톤숄츠** 기자(독일방송 프리랜서) 57
- **류병균** 상임대표(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64
- **정영섭** 사무국장(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73
- **윤현규**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국민참여단) 77
- **강병석** 강사(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국민참여단, 서정대학교) 88

개 회

개회사



국회의원 조정훈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노동자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도 공동주최로 뜻을 모아주신 기동민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윤재갑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 국가입니다. 이미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통계청은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전망'을 통해 이주배경인구수를 2020년 218만 명에서 2040년 323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제 '대한 외국인'은 더 이상 낯설고 생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과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의미 있는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문화 다양성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으며,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순혈주의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주민들은 법적·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각기 다른 부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 경제 규모와 영향력에 걸맞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는 사회 발전의 초석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주·국경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총 세 번의 세미나를 통해, 이민청의 설립 필요성과 목표, 관할 정책 및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대계 차원에서 이민청 신설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회의원 조정훈

환영사



이민정책연구원장 강동관

안녕하십니까, 이민정책 연구원장 강동관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세미나에 어렵게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내·외빈분들,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분들, 그리고 이민관련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이민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담당자 여러분과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조정훈 의원님을 비롯한 기동민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윤재갑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15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가 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약 46만 명, 결혼이민자 17만 명, 유학생 14만 명, 외국 국적 동포 35만 명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4차에 이르는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추진해왔지만, 우리는 인구절벽이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2021년 합계출산율

0.81명이라는 숫자가 이를 대변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70년, 전체인구 중 유소년 인구는 7.5%, 생산연령 인구는 46.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인구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반이 되는 인구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이 국가의 중추적인 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민자의 유입·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연구를 더 심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입과 사회통합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이행해 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민청 설립은 국가 미래와 이민과 그로 인한 사회현상들을 아울러 국가가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16년 전부터 이민청 설립에 대한 논의가 오갔으나, 아직도 성과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무부 장관께서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추진 중요성을 강조하신 점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이민청 설립 방향에 관한 정-관-학이 머리를 맞대는 첫 번째 공론의 장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발표자분과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혜안을 기대합니다. 우리 연구원 또한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한 이민정책의 발전과 향후 이민청 설립에 대한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직 코로나의 위세가 등등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이민정책연구원장 강동관

축사



국회의원 기동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이민청 톺아보기」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사 주최에 앞장서주신 조정훈 의원님을 비롯한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18년 236만 명에서 201만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불법체류외국인 수는 같은 기간 동안 39만명에서 40만명으로 증가해 불법체류율이 15%에서 19.6%로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없이 각 12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에만 중점을 둔 사후대응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의 관리 방식 다각화 및 제도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의 설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민청 신설을 발표했으나,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민청 설립을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이민청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

히 해야 합니다.

이번 개최되는 세미나는 외국인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민청의 설립 필요성·역할·목표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나아가 안전한 데이터 구축, 합리적 출입국관리를 통한 내·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은 만큼 건설적인 토론이 성사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민청 톺아보기〉를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여해주신 분들의 생산적인 의견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회의원 기동민

축사



국회의원 김형동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경북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신 조정훈 의원님과 공동개최에 참여해주신 의원님,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그리고 세미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 향후 국가 간 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외국인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우리 주변국가들은 출입국·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우수한 외국인 유치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현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민정책의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행정조직으로는 새로운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전망과 적정 이민 규모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논의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국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구 불균형을 조절하고, 균형발전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국적, 이민에 대한 인식과 함께 노동시장과 일자리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차부터 3차까지 진행되는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과 향후 예정된 세미나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민자 수용과 관리에 따른 장단기 사회비용 분석, 중장기 인력 수요 전망을 위한 출입국과 체류 관리, 사회통합, 국적 관리 등의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회의원 김형동

축사



국회의원 류호정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개최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미나 준비에 애써주신 조정훈 의원님,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을 비롯해, 세미나를 공동주최해주신 기동민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윤재갑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 활력 제고와 내·외국인의 사회통합 촉진'을 주제로 발제해주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상돈 선임연구위원님, 이민정책연구원 장주영 부연구위원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한국이민학회장 윤인진 교수님, 다양한 시각에서의 토론을 위해 의견을 개진해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영욱 유럽팀 팀장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하경희 연구원님, 독일방송 프리랜서 안톤숄츠 기자님,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류병균 상임대표님,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님,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국민참여단 윤현규님, 강병석 강사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TV, 유튜브, 신문지면, 도서 등 곳곳에서 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생활권, 직종에 따라 일상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주민은 함께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 등의 '대상 중심 지원' 패러다임을 넘어야 합니다. 국경 출입,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난민 등 '초기 정착' 위주의 정책과 더불어,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특정 부처가 통제하는 부서가 아닌 지원부처 산하의 청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원점부터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본과 같이 법무성 외청의 지위를 부여하여 독립적인 행정집행이 가능하게 하거나, 독일과 같이 입국, 비자 발급, 체류, 사회통합, 귀화 등 외국인 정책 전반을 총괄할 청 규모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민청 설립이 필요합니다.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동향보고서 2018' 등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108명당 1명은 강제 이주민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삶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해오는 기후 재난은 국제 사회의 이주민 증가 속도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민 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일본, 중국, 대만, 독일, 스위스는 우리나라의 '청 단위' 조직에서 이민 정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호주, 프랑스의 경우 지역사회에 이주 아동 지원 기관을 마련해, 언어 학습과 문화적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청 설립은 단순히 이민 정책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이기도 합니다. 고령화 사회 목전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이기도 합니다. 혐오 정서에 대한 시민의식을 되돌아볼 사회 정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제안된 외국인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 이민청 설립을 위해 논의할 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앞으로도 이민청 설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그리고 관심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회의원 류호정

축사



국회의원 유상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권위원장 유상범입니다.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진지한 논의를 위해 함께 힘써 주신 여러 의원님들,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 깊이를 더해주실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현재 한국은 역사상 유례 없는 인구 위기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인구 절멸'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 0.81명을 출산한다는 의미로서, 이는 문자 그대로 전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수년 간 출산율 감소는 급격히 가팔라지면서, 이대로라면 2025년 한국은 출산율 0.6명대라는 끔직한 인구절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부도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80조 2,000억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러한 추세는 더 이상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 위기를 극복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이민청입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 사회에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이미 농어업과 건설 현장에서는 외국인 없이 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민청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법무부 주요 과제로서 신설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민청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1차부터 3차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선진 이민 행정 제도와 관련된 민・관의 다양한 관점과 반짝이는 지혜가 모여서 이민청 개청에도 속도가 더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이민청 설립 논의・입법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회의원 유상범

축사



국회의원 윤재갑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출신 국회의원 윤재갑입니다.

오늘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제3차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뜻깊은 세미나를 주최해주신 조정훈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공동주최해주신 기동민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 및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에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 청년층의 꾸준한 도시이탈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

괴 등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있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자국민의 건축업 및 제조업 등 3D직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각 산업군에서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및 임금 문제,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단기적이고 인력 충원에만 치중한 현 제도와 산업군 별로 분산되어있는 소관 기관들로 인한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등 외국인근로자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의 설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16년 동안 논의만 오갔던 이민청 설립에 대해, 지난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선진화된 이민법제 및 시스템 구축과 우리 사회·지역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 인재 유치 등을 언급하며 이민청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와 학계, 현장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민청 설립 방향을 제안하는 이번 세미나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외국인근로자 등 이주민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해법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제3차 세미나」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회의원 윤재갑

축사



국회의원 이명수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시갑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명수입니다.

오늘 「이민청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책세미나를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정훈 의원님,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을 비롯해 함께 해주신 기동민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윤재갑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5%가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수는 약 215만명(2020년말 기준)으로 총인구의 4.1%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의 비율이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다문화·다인종 국가를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외국인 이민정책을 관여하고 있어 정책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25일, 외국인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민청 신설의 내용을 담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께서 이민청 신설에 대해 공감을 해주셨고, 법안의 빠른 통과와 이민청 신설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제3차 세미나의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상돈 선임연구위원님, 이민정책연구원 장주영 부연구위원님을 비롯해 토론을 맡아주신 한국이민학회장 윤인진 교수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영욱 유럽팀 팀장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하경희 연구원님, 독일방송 프리랜서 안톤숄츠 기자님,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류병균 상임대표님,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님,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국민참여단 윤현규님, 강병석 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민청 추진의 방향성이 정립되고, 이민청의 기능과 추진전략에 대해 다양한 고견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정립된 의견을 바탕으로 선진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이민청 신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를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회의원 이명수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제3차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

발제1

외국인력 활용의 경제적 효과와 중장기 외국인력 수요 전망

이상돈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외국인력 활용의 경제적 효과와 중장기 외국인력 수요전망

2022.9.30.

이상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목 차

I 외국인력 활용의 경제적 효과

II 중장기 외국인력 수요전망

III 정책적 시사점

Ⅰ. 외국인력 활용의 경제적 효과

1. 외국인력 현황

1) 상주인구 추이

■ **외국인 상주인구는 96만명(2012년)에서 1,332만명(2021년)으로 지속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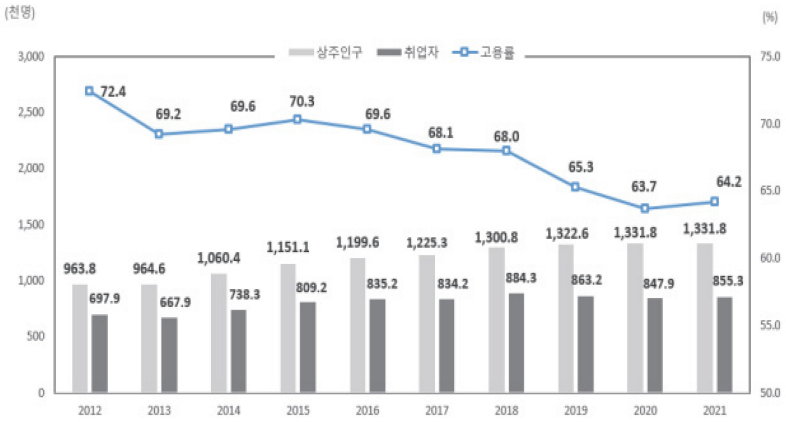
- 최근에는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 빠르게 증가

■ **체류외국인 경제활동상태**

-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제활동 상태는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실정
- 91일 이상 체류하는 상주 외국인에 대한 경제활동은 통계청'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舊 '외국인 고용조사')'를 이용해서 파악

1. 외국인력 현황

[그림 1-1] 외국인 상주인구 추이



자료: 통계청,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1. 외국인력 현황

2) 체류자격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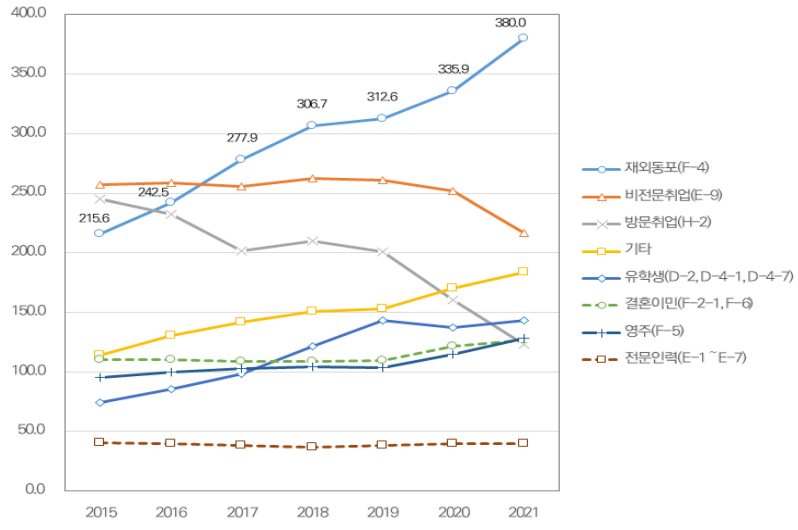
■ 상주 외국인 중에서 가장 큰 집단은 비전문취업(E-9)에서 2017년 이후 재외동포(F-4)가 차지

■ 최근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규모 증가는 약화

- 재외동포(F-4)와 유학생(D-2, D-4-1, D-4-7)의 규모는 크게 증가

1. 외국인력 현황

[그림1- 2] 외국인 체류자격별 규모 및 추이 (단위: 천명)



자료:통계청. 외국인 고용조사(2015~2016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17~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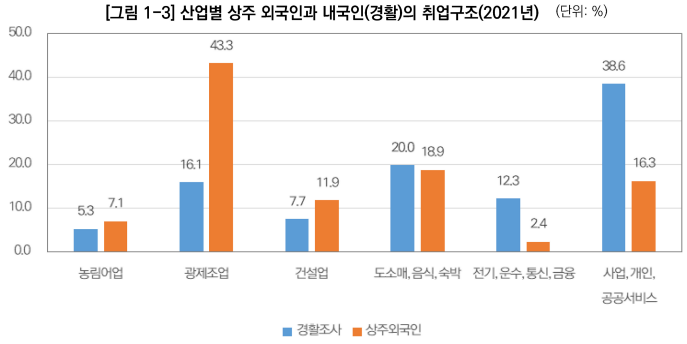
1. 외국인력 현황

3) 상주 외국인 취업현황

■ 20201년 기준 상주 외국인 중 취업자는 855천명[1)]

- 광업. 제조업 종사자 비중(43.3%), 도소매음식 숙박업(18.9%)
- 내국인과 비교시. 광·제조업과 건설업에 주로 종사

[그림 1-3] 산업별 상주 외국인과 내국인(경활)의 취업구조(2021년) (단위: %)



자료: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

주 1) 통계청 조사에 포착되지 않은 단기체류(90일 이하) 입국자와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외국인수를 감안할 때, 실제 외국인 취업자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론됨.

2. 외국인력 활용 분석 유형

1) 경제효과 분석

■ 거시경제 효과
■ 노동시장 효과

2) 분석 대상

■ 유입 유형
- 정주형 vs 단기 거주형

■ 숙련 유형
- 숙련 노동 vs 비숙련 노동

3. 거시 경제 효과

〈표 1-1〉 해외인구 변화에 따른 GDP 변화 (단위:%)

	2020	2030	2040	2050	2060
A : 출산율 감소에 따른 효과	-0.4	-0.2	-1.1	-3.0	-5.0
B1 : 경제활동인구의 5%를 해외인구로 유입	-	2.1	0.7	-1.7	-3.7
B2 : 유입된 해외 인구가 정주형 이민으로 전환	-	2.1	1.7	-0.6	-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II

〈표 1-2〉 이민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단위:%)

	이민 5%	이민 10%	이민 20%
실질임금	−0.1	−0.2	−0.4
총 고용	0.11	0.2	0.37
총 산출량	0.06	0.11	0.19
실질수입	0.04	0.07	0.13
실질민간소비	0.02	0.03	0.06
실질수출	0.11	0.21	0.39
총 조세수입	0.03	0.05	0.09
정부지출	0.02	0.03	0.06
실질GDP	0.05	0.1	0.19

자료: 조경엽·강동관(2014)

4. 노동시장 효과

〈표 1-3〉 외국인력 유입의 노동시장 효과

한진희, 최용석(2006)	•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제조업에서 기계조작 및 조립공 등 반숙련 노동력을 대체
김정호(2017)	• 내국인 전체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여성근로자의 고용은 축소
이규용 외(2017)	• 방문취업 초기에는 보완성,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의 영향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음 – 자료 포괄범위가 적음
김정호(2020)	•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전반적 효과는 미미, 학력별로는 차이
이규용 외(2020)	• 외국인력 유입이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 없음. • 학력별로는 고졸미만 임금상승률 감소, 대학교육이상 임금상승률 증가 • 산업별로는 농업과 건설업은 임금 상승, 제조업은 임금 영향 없으나 고용 감소 효과

자료: 이규용(2021), 외국인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11

II. 중장기 외국인력 수요전망

1. 인구구조의 변화

1) 저출산 • 고령화의 가속화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저출산 확산, 평균수명 연장, 베이비부머 (1955~1963년생, 710만 명) 고령 연령 진입 등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됨

- 초저출산 현상(TFR 1.3명 이하로 진입)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
-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2) 연령구조 변화 가속화

■ 유소년인구 감소
■ 고령인구 증가
■ 생산연령인구 감소 : 2016년 3,760만 명 정점

3) 핵심생산인구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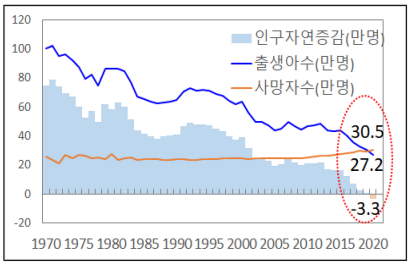
■ 25세~49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1. 인구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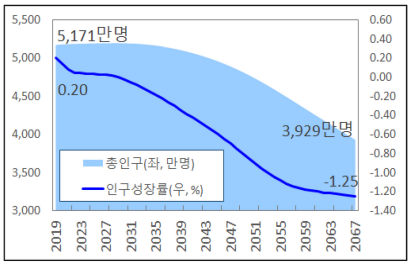
[그림 2-1] 인구 약세 전환(dead cross)

(단위: 만 명, %)

〈자연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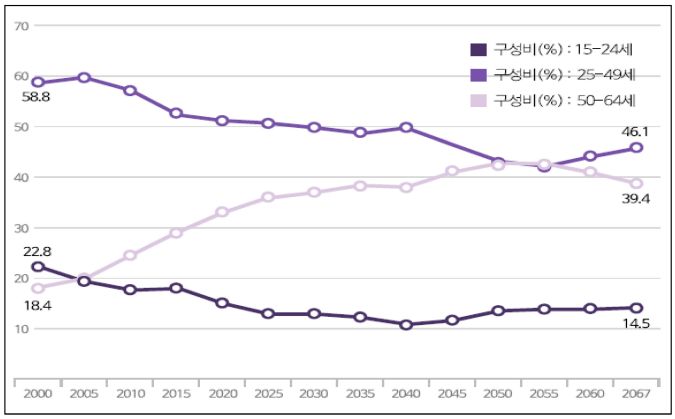
〈절대인구〉



주: 1) 인구의 자연증감은 인구동향조사(통계청)를 기반으로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뺌
2) 절대인구변화는 장래인구추계(통계청)를 기반으로 함

1. 인구구조의 변화

[그림 2-2]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자료: 2019년 장래인구주계(통계청)

2. 산업 및 인력구조의 변화

1) 중장기 인력수급 2019~2029 전망 (한고원, 2020)

■ 고령화로 인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과 기술혁신에 따른 '정보통신업' 등에서 인력수요 규모가 크게 확대 전망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자동화, 비대면 원격 서비스 등과 관련된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

- 산업 구조 변화 촉진

■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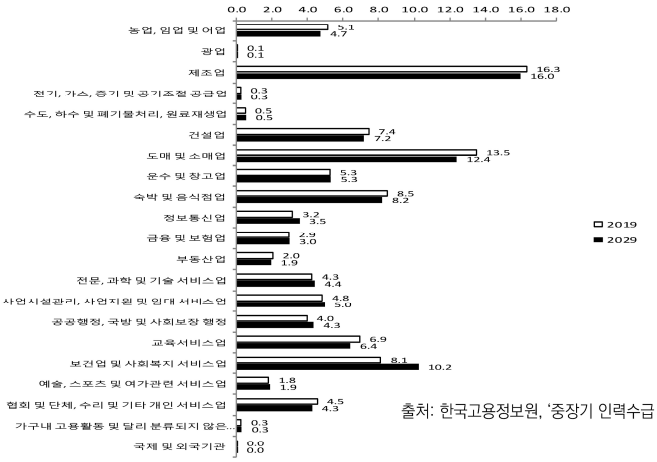
2. 산업 및 인력구조의 변화

2) 산업별 취업자 전망

■ 제조업 취업자는 2019~2029년 중 38천 명, 연평균 0.1% 증가 전망

■ 서비스업 취업자는 2019~2029년 중 865천 명, 연평균 0.4% 증가 전망

[그림 2-3] 산업대분류별 고용구조 전망 (단위: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9~202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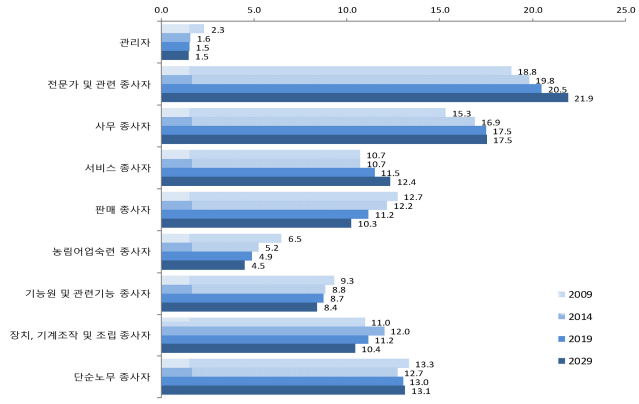
2. 산업 및 인력구조의 변화

3) 직업별 취업자 전망

■ 고숙련 직업군에서 인력수요 크게 발생

■ 저숙련 직업군 중 단순노무직에서도 인력수요가 발생

[그림 2-4] 직업대분류별 취업구조 전망 (단위: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9~2029', 2020

3. 외국인력 수요 전망

■ 외국인력수요 정의

- 국내인력수급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파생수요

■ 외국인력수요 전망방법[2)]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통해 도출된 수급차를 이용하여 전망
- 부족률 개념과 국내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외국인력 필요분야를 전망

주2) 이하에서는 최근 인력수급차 전망결과 부재로 부족률 개념과 국내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외국인력 필요분야 전망을 소개함.

3. 외국인력 수요 전망

1) 분석방법

■ 산업별로 아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외국인력 수요가 큰 분야 도출

- 인력부족 현상 지표: 부족인원과 부족률
- 취업여건 반영 지표: 취업자와 임금수준

3. 외국인력 수요 전망

2) 분석과정

■ 1단계: 인력부족 산업 도출 (부족인원 & 부족률 활용)

- 산업중분류(69개 산업)별 각 산업의 평균부족인원과 평균 부족률을 전체 산업의 평균과 비교하여 4개의 그룹으로 구분
  - 분석자료: 고용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2009-2021) 원자료 하반기(10월)

. 1그룹 : ($L_i > \overline{L}$) & ($R_i > \overline{R}$) 인력부족 심각
. 2그룹 : ($L_i < \overline{L}$) & ($R_i > \overline{R}$) 인력부족 보통
. 3그룹 : ($L_i > \overline{L}$) & ($R_i < \overline{R}$) 인력부족 보통
. 4그룹 : ($L_i < \overline{L}$) & ($R_i < \overline{R}$) 인력부족 미미

단, L_i (i산업 평균 부족인원), $\overline{L}$ (전산업 평균 부족인원)
R_i (i산업 평균 부족율), $\overline{R}$ (전산업 평균 부족율)

- 전체산업의 평균부족인원 및 평균 부족률을 축으로 각 산업의 평균부족인원 및 평균 부족률을 그래프로 표시
  (즉, 4사분면으로 표현)

❖ 부족률 = [(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 × 100

21

3. 외국인력 수요 전망

2) 분석과정

■ 2단계: 인력수요 여건 좋은 산업 도출 (취업자 & 시간당 임금 활용)

- 산업중분류(69개 산업)별 각 산업의 평균취업자와 시간당 임금을 전체산업의 평균과 비교하여 4개의 그룹으로 구분
  - 분석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9~2021) 자료

. 1그룹 : ($E_i > \overline{E}$) & ($W_i > \overline{W}$) 인력수요 여건 좋음
. 2그룹 : ($E_i < \overline{E}$) & ($W_i > \overline{W}$) 인력수요 여건 보통
. 3그룹 : ($E_i > \overline{E}$) & ($W_i < \overline{W}$) 인력수요 여건 보통
. 4그룹 : ($E_i < \overline{E}$) & ($W_i < \overline{W}$) 인력수요 여건 나쁨

단, E_i (i산업 평균 취업자), $\overline{E}$ (전산업 평균 취업자)
W_i (i산업 평균 시간당 임금), $\overline{W}$ (전산업 평균 시간당 임금)

- 전체산업의 평균취업자 및 시간당 임금을 축으로 각 산업의 시간당 임금을 그래프로 표시
  (즉, 4사분면으로 표현)

22

3. 외국인력 수요 전망

2) 분석과정

■ 3단계: 외국인력 수요가 큰 산업 도출 (1단계와 2단계 도출 결과 활용)

- '부족인원 & 부족률' 4개그룹과 '취업자 & 시간당 임금' 4개그룹으로부터 아래 방식으로 도출

. A그룹 : ('E & W' 1그룹) & ('L & R' 1그룹)
. B그룹 : ('E & W' 1그룹) & ('L & R' 2·3그룹)
. C그룹 : ('E & W' 2·3그룹) & ('L & R' 1그룹)
. D그룹 : 위 A, B, C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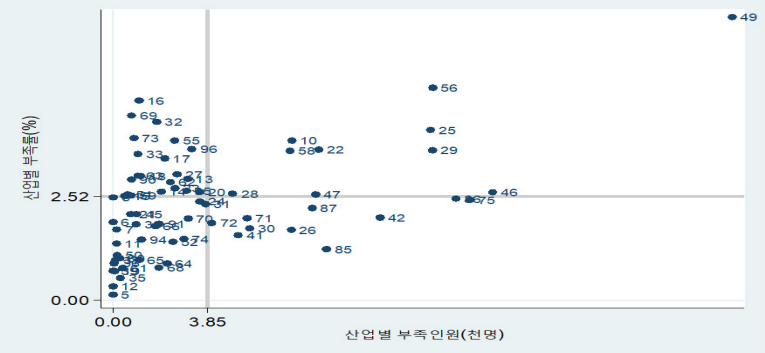
단, E(취업자), W(시간당 임금), L(부족인원), R(부족율)

- **A그룹** : 내국인 공급이 부족하여 외국인력 수요가 큰 산업
  - 상대적으로 인력수요(또는 취업)여건이 좋으면서도 인력부족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처한 산업들
- **B그룹 & C그룹** : 내국인 공급이 부족하여 외국인력 수요가 존재하는 산업
  - 인력수요(또는 취업)여건이 좋으면서도 인력부족 상황이 보통 수준에 처한 산업(B그룹)과 인력수요 (또는 취업)여건은 보통수준이지만, 인력부족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처한 산업(C그룹)들
- **D그룹** : 상대적으로 외국인력 수요가 작은 산업

3. 외국인력 수요 전망

3) 분석결과

■ 1단계 : 인력부족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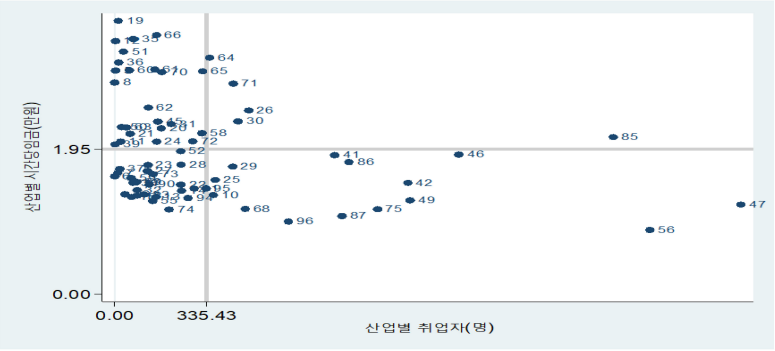


- 1그룹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을 포함하여 10개 산업 해당
- 2그룹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을 포함하여 21개 산업 해당
- 3그룹 : 교육서비스업(85)을 포함하여 10개 산업 해당
- 4그룹 :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광업(5)을 포함하여 28개 산업 해당

3. 외국인력 수요 전망

3) 분석결과

■ 2단계 : 인력수요 여건 좋은 산업



- 1그룹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을 포함하여 5개 산업 해당
- 2그룹 :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업 제조업(19)을 포함하여 24개 산업 해당
- 3그룹 : 음식 및 주점업(56)을 포함하여 15개 산업 해당
- 4그룹 : 숙박업(55)을 포함하여 25개 산업 해당

3. 외국인력 수요 전망

3) 분석결과

■ 3단계 : 외국인력 수요가 큰 산업

- A그룹 : 해당 산업 0개
- B그룹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을 포함하여 4개 산업 해당
- C그룹 : 식료품 제조업(10)을 포함하여 8개 산업 해당

〈표 2-1〉 외국인력 수요 기준으로 구분한 산업중분류 (2009-2021년)

2단계분류	1단계분류	종합기준분류	산업 CODE	산업중분류
1	1	A그룹	-	-
1	3	B그룹 (4개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1	전문서비스업
			85	교육 서비스업
2	1	C그룹 (8개산업)	58	출판업
3	1		10	식료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III. 정책적 시사점

1. 비전문인력 중심의 현재 외국인력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토 필요

■ 인구변동, 기술혁신, 디지털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과 이에 따른 노동수요의 구조변화는 외국인력 정책 전반의 변화 필요

■ 다양한 숙련수준의 외국인력 그리고 다양한 인력유입 및 활용 방식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역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를 촉발

■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이 경직되고 분절된 외국인력 공급방식은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폭넓은 전문성의 스펙트럼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

2.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농업과 건설업에 추가적인 공급 필요

■ 이 부문에서는 외국인력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임금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노동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여건을 반영하거나 혹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보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농어촌 지역은 초저출과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농림어업 분야의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시급

■ 다른 부문에 비해 외국인력 유입이 상대적으로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3. 경제 및 산업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진행에 따른 숙련 외국인력 수요 증대 예상

■ 기술 발달로 단순 반복 직무 및 생산 업무는 감소,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

- 기술대체의 용이성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외국인력 수요는 기존의 양태와는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큼

■ 내국인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외국인력정책수립

- 내국인들과 외국인들이 최대한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력도입 산업 및 직종 선정

4. 다양화하고 있는 외국인력 수요에 맞춰 장단기 관점에 입각하여 외국인력 공급 관련 체계 구축 필요

■ 아울러 고용형태의 다양화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제3차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

발제2

선·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이민자에 대한 인식 개선

장주영 부연구위원
(이민정책연구원)

선·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이민정책연구원

장주영 부연구위원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MR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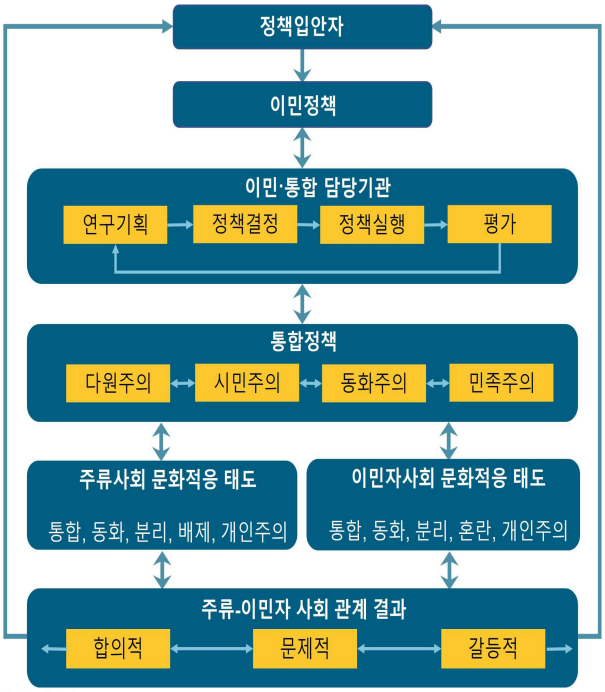
1 이민청 설립의 선결 사항

2 국민의 이주민·이민정책에 대한 태도

3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MRTC

1 이민청 설립의 선결 사항



출처: Bourhis, R. 외 (1997). 이민·통합정책과 문화적응 태도의 관계

1 이민청 설립의 선결 사항

이민 정책

-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
- 단기노동인력, 중장기 노동인력, 전문직, 유학생, 결혼이민자, 영주자, 투자자, 귀화자 등

사회통합 정책

- 수용한 이주민을 어떻게 주류사회와 통합시킬 것인가
- 주류 사회의 구성원이 새로운 구성원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 출신국과 수용국의 이해 관계
- 국제사회의 환경과 정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 새로운 사람과 기존의 사람 간의 생각, 생활양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의 공유, 분배, 확대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 보장과 의무 이행

1 이민청 설립의 선결 사항

국민적 합의(合意)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
-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기회 균등
- 우리들과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국민적 합의(合議)

선·이주민 사회통합의 방향성

- 기존의 한국 문화와 이주민의 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단기적 사회구성원과 중장기적 사회구성원에 대한 통합을 달리 할 것인가
- 이주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민정책연구원

1 이민청 설립의 선결 사항

국민적 합의(合意) : 대한민국의 존속과 인구 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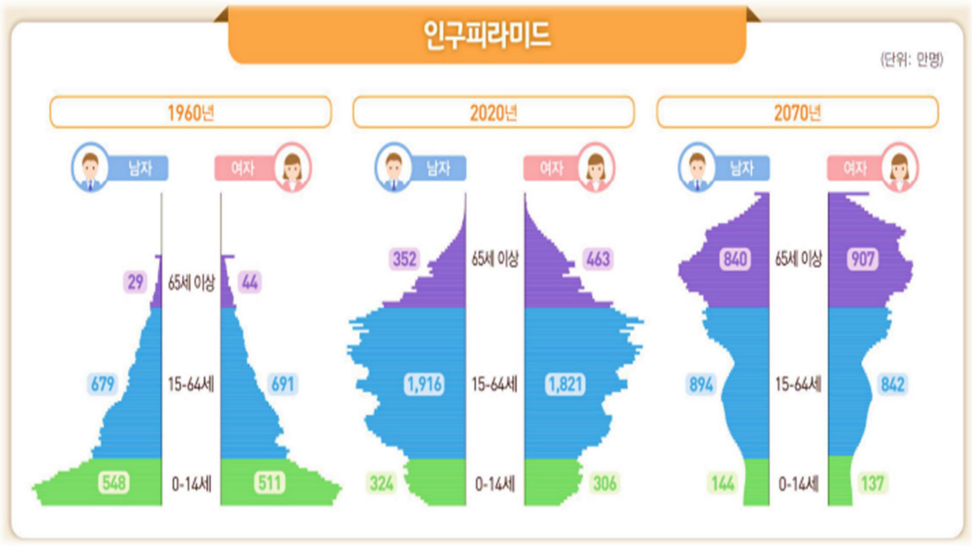


그림 출처: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1 이민청 설립의 선결 사항

국민적 합의(合意) : 대한민국의 존속과 인구 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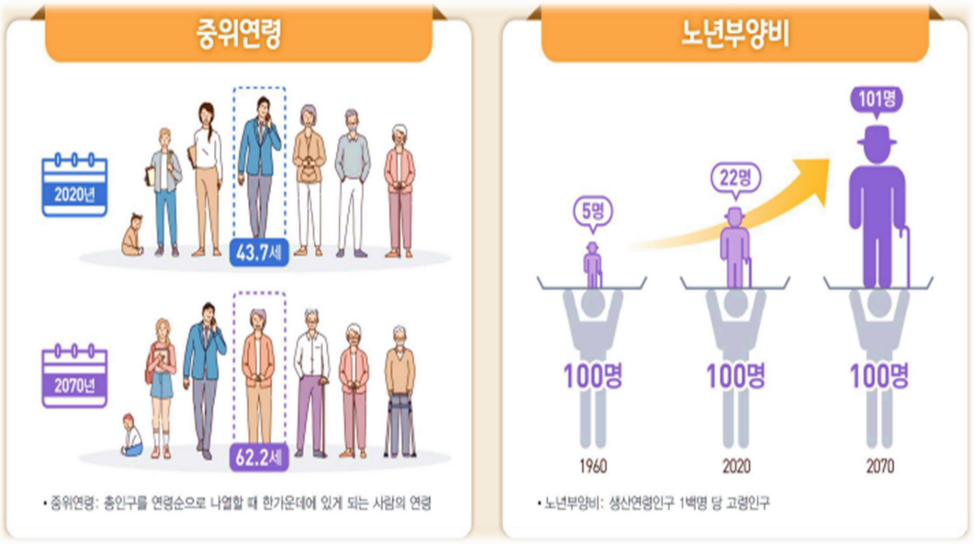


그림 출처: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1 이민청 설립의 선결 사항

추측 가능한 국민적 합의(合意)

- 대한민국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연령 인구가 필요
- 현재 상황에서 내국인 기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산업의 노동력 확보 필요
- 저출생이 장기화됨에 따른 중장기적 대체 인구의 필요
- 선주민인 국민의 가족인 이주배경 인구의 사회 통합 필요

1 이민청 설립의 선결 사항

이민·사회통합정책 방향성 변화의 예(미국 USCIS 강령)

- 기존 강령: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nation of migrants)
- 트럼프 정부 강령: 이민자의 나라 삭제, 법에 근거한 이민 체계의 집행과 미국인 보호 강조
- 바이든 정부 강령: 미국인 보호 삭제, 환대와 가능성의 나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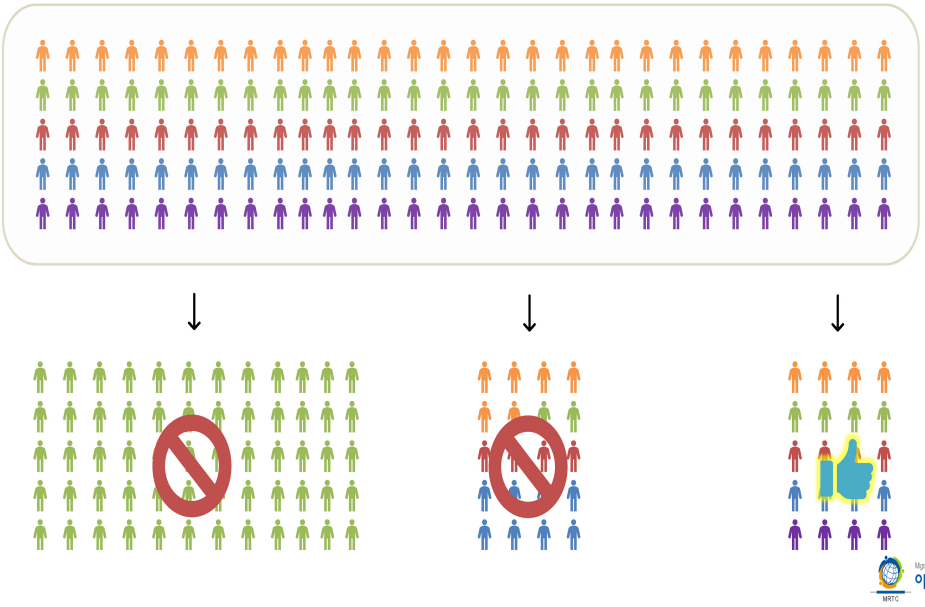
1 이민청 설립의 선결 사항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合意)는 어렵지만 지속적 합의(合議)는 필요

- 이주민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모든 국민의 의견 확인과 일치된 의견 도출은 불가능
- 전문가의 정책 구상과 해당 정책의 목적 및 여파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인 필요

2 국민의 이주민·이민정책에 대한 태도

대표성 있는 의견 조사란?



이민정책연구원

2 국민의 이주민·이민정책에 대한 태도

조사 내용과 질문 방식, 질문 순서의 중요성

- 설문 조사는 스토리 텔링(story telling): 응답자는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응답하고자 함
- 민감한 내용의 질문은 대면 조사, 전화 조사에서 정직한 응답을 얻어내기 어려움
- 사회적 동조가 중요한 문화권에서는 주변의 "정답"을 인식한 대답을 하기도 함

우리 정부는 **난민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국제 난민을 수용해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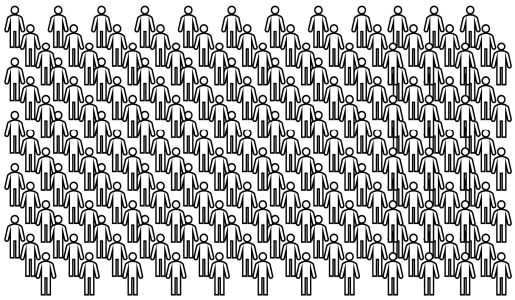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노인의 기준 연령을 현행 만65세에서 만70세로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등의 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예멘 난민 561명이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하여 그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멘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정책연구원

2 국민의 이주민·이민정책에 대한 태도

국민청원 내용의 대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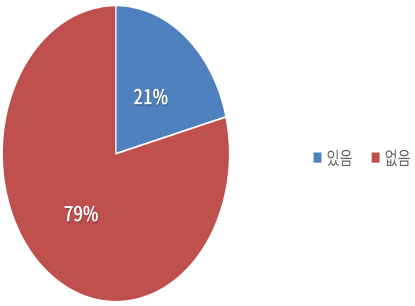
- 청원인의 수는 많지만 **어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지닌 인구**인지 확인이 어려움
- 긴 국민청원문의 모든 쟁점에 찬성하는지, 일부 사안에만 찬성하는지 알 수 없음
- 많은 국민(예: 난민 청원 71만명, 국적 청원 31만명)이 이민·사회통합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줌
- 반대하는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드러남으로 찬성·중도 의견 파악 필요

이민정책연구원

2 국민의 이주민·이민정책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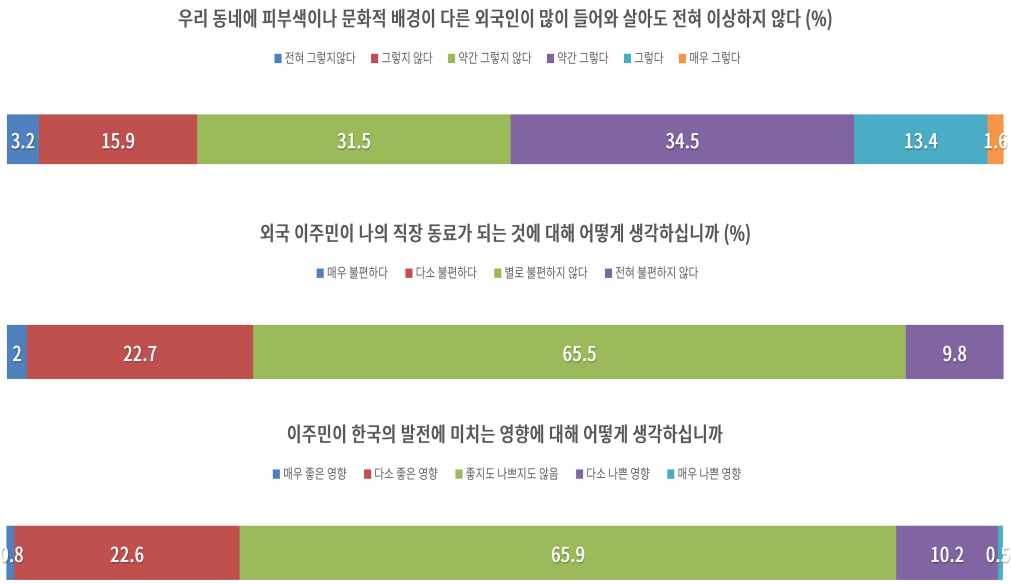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응답자 1,310명)



자료 출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1 (응답자 23,399명)

이민정책연구원

2 국민의 이주민·이민정책에 대한 태도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2022).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응답자 5,000명)

2 국민의 이주민·이민정책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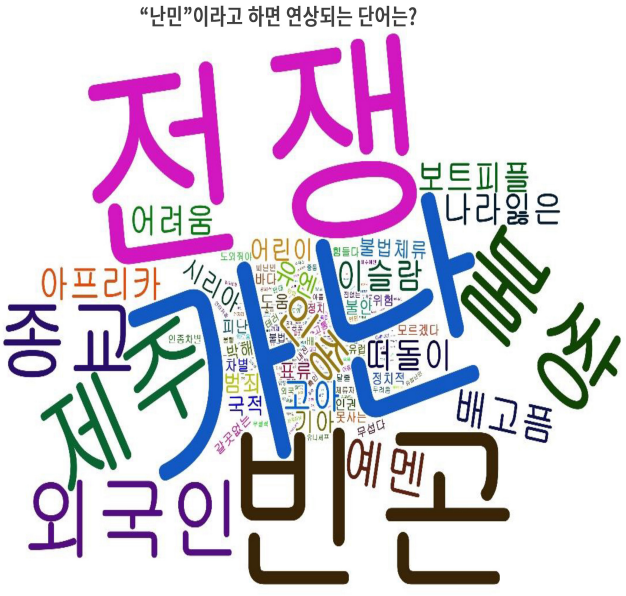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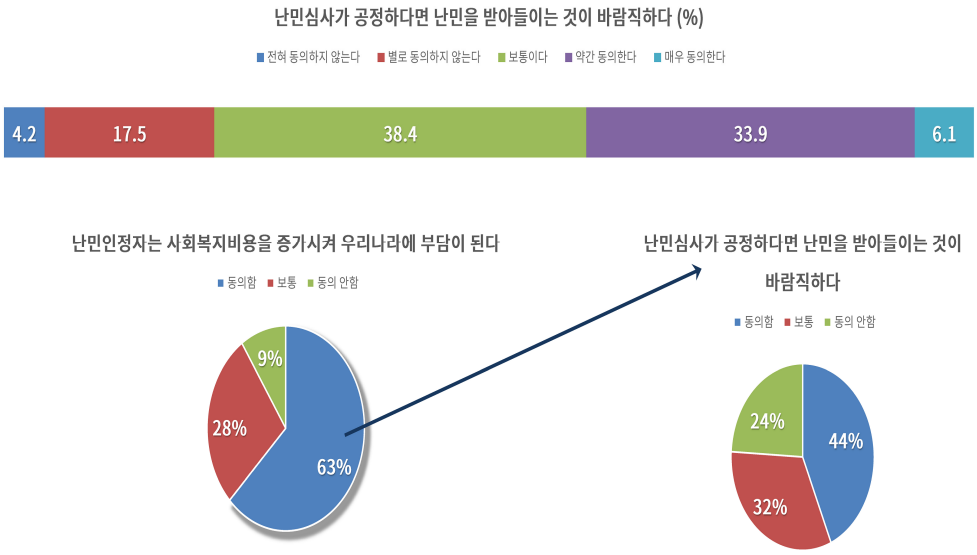


그림 출처: 이민정책연구원(2019). 난민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응답자 4,001명)

2 국민의 이주민·이민정책에 대한 태도



출처: 이민정책연구원(2019). 난민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응답자 4,001명)

3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국민의 다양성: 이주민·사회통합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태도

- 2020년 외국인 고용 사업체 수 약 5만7천 개
- 다문화 가구 수 약 30만, 다문화 가구원 약 110만 명
- 주민 20명 중 1명 이상이 이주민인 시군구 거주자 약 1,790만 명
- 예멘 난민 반대 청원인 약 71만 명
- 일제 강점기 경험자 약 315만 명
- 2021년 청년실업자 약 23만 명
- 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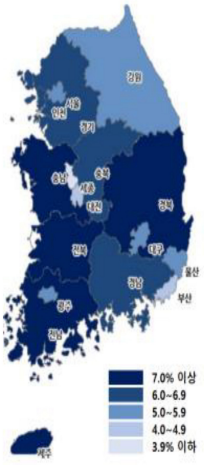


그림 출처: 통계청(2021).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3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정보 제공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 허위정보(d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악성정보(malinformation)의 전파 방지
- 정보를 주기적·선제적으로 제공

이해 제고

이민·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 정책의 목적, 대상자에 대한 홍보
- 정책 결과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

설명 방식

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한 방식의 설명 제공

- 정책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중립적 방식의 설명
- 공포 프레임 지양
- 큰 그림(숫자로서의 이주민)과 작은 그림(사람으로서의 이주민) 함께 설명

의견 수렴

다양한 국민의 의견 수렴

- 이해관계자의 의견 정기적 청취
- 일반 국민의 우려 불식과 개선 요청 수렴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MRTC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

토론

- 장영욱 유럽팀 팀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하경희 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안톤숄츠 기자(독일방송 프리랜서)
- 류병균 상임대표(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 정영섭 사무국장(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 윤현규(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국민참여단)
- 강병석 강사(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국민참여단, 서정대학교)

토론1

장영욱 유럽팀 팀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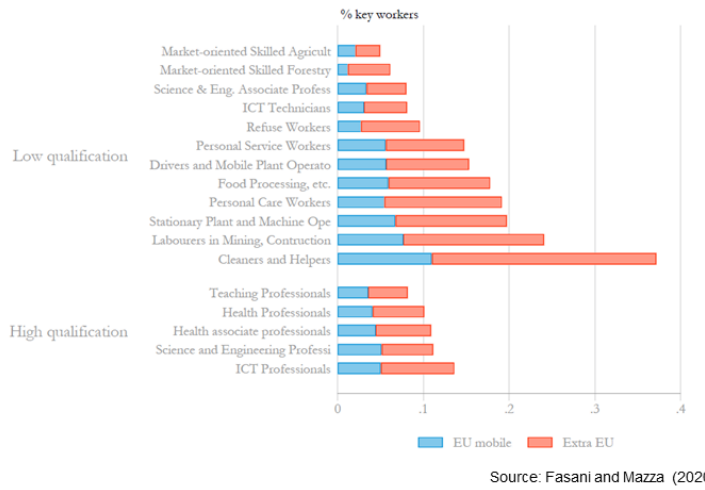
□ **(이민의 경제적 영향)** 통상적으로 이민자 유입은 수용국의 임금, 고용률, 생산 비용, 상품 가격, 재정 지출 등에 영향을 미침.

- 이민자 유입이 집중된 산업과 고용형태에서 임금이 하락하며, 내국인의 일자리가 외국인에 의해 대체되는 양상을 보임.
- 국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며, 생산 비용과 상품 가격을 안정시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존재함.
- 생산가능인구가 유입될 경우 국가재정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나, 아동, 여성 등 노동참여율이 낮거나 난민 등 지원이 필요한 이주민 유입 시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기도 함.
- 수용국의 경제구조에 적합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닌 이민자가 유입될 경우 긍정적 경제 효과 증대

□ **(코로나19 기간 외국인력 의존)** 코로나19 기간 중 외국인력 공급부족이 심각해졌고 특히 필수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김.

- 유럽의 필수업종은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아래 그림 참고).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입국제한 조치는 노동공급 부족을 심화시킴.
- 외국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

Figure 6: Share of Immigrants among Key Workers, by Occupation



Source: Fasani and Mazza (2020), p. 8

□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간 약 720만 명의 국외 이주 난민이 발생하였으며, 폴란드, 헝가리 등 접경국과 다른 유럽연합 국가로 유입됨(아래 표 및 그림 참고).

- 유럽연합은 임시보호제도, 보조금 지급, 아동 대상 교육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 별도의 지원정책을 도입

- 특히 임시보호제도는 2022년 2월 24일 이후 탈출한 우크라이나 영구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 근로, 의료, 교육, 복지 등의 권리를 제공하며 원할 경우 다른 유럽연합으로 이주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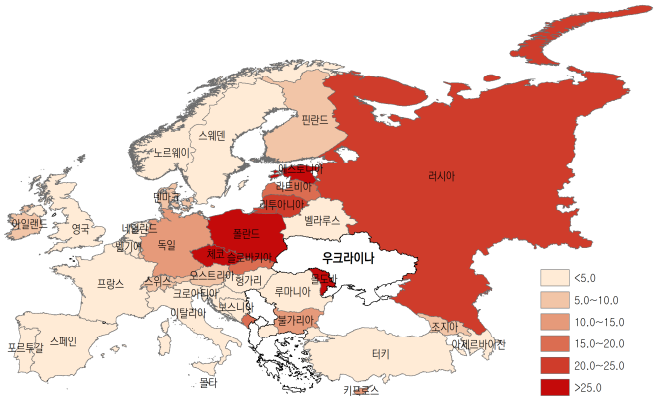
표 1. 주요국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현황

(단위: 명)

국가	난민 수	인구 1,000명당 난민 수
폴란드	1,274,130	33.6
독일	971,000	11.7
체코	413,121	38.7
이탈리아	159,968	2.7
튀르키예	145,000	1.7
스페인	133,913	2.8
영국	111,900	1.7
프랑스	96,520	1.5
몰도바	89,649	33.5
슬로바키아	87,030	15.9
불가리아	86,722	12.5

그림 2. 유럽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현황

(단위: 인구 1,000명당 명)



주: [표 1], [그림 2]에서 '난민'은 전쟁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 수용국으로 이동한 모든 사람을 의미(2022년 8월 31일 기준).
자료: UNHCR, 장영욱, 정민지, "최근 유럽 이주민 유입 동향 및 정책 시사점", KIEP에서 재인용

- 2015년 시리아 난민 유입 당시보다 훨씬 더 수용적인 분위기가 형성

- 이미 우크라이나 출신 이주노동자 다수 존재하며, 동유럽 노동부족이 심각해진 상태에서 난민 유입 부담의 긍정적인 효과 기대

- 유럽중앙은행과 OECD는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으로 인해 유럽 지역의 노동가능인구가 0.5%(약 120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를 통해 농업,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노동력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

- 반면 단기적으로 주택 임대료 급증, 실업률 증가, 재정부담 가중 등의 부정적 효과도 존재 가능

- 영향의 크기와 방향은 유럽에 정착하는 난민의 규모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 **(북아프리카 이주민 유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난,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유럽 내 이주민 유입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저소득국가로부터의 유입이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통제 여파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던 정규·비정규 이주 및 난민 신청은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저소득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저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용성은 낮은 편

- 국경지역 무력충돌 등 부작용 발생: 2022년 6월 스페인 자치도시 멜리야(Melilla)와 모로코 간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 이민자·난민들과 모로코·스페인 경찰 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37명의 이민자·난민 사망

□ **(시리아 난민 유입 후 정치 동향)**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 난민 유입에 대한 반감이 정치적 영향력 행사

- 프랑스 국민연합(RN), 스웨덴민주당, 이탈리아형제들 등 극우정치세력이 최근 선거에서 영향력을 키우거나 연립정부를 구성하며 집권

- 공통적으로 이주민, 난민 유입에 대한 반감 표시하며 영향력 증대

- 경제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선 이민으로 인한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음.

토론2

하경희 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 현황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공정 산업

-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공정기술 6개와 제조업 미래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 8개로 구성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혁신의 원천으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 5.3%, 매출액 8.4%, 종사자수 11.5%('20), 생산·고용 등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큰 산업

* 뿌리산업 생산액 : 143조원('20) ※ 자동차 산업('20) : 197조원

* 생산액 10억원당 직간접 취업유발계수('19): 뿌리 7.9명 ※ 전자 3.6명, 화학 5.4명

○ 뿌리산업은 청년층의 취업 기피, 근로자의 고령화, 외국인 수급 불안 등으로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음

- 뿌리산업 분야 인력 부족률('20) : 뿌리 2.0% 〉 제조업 0.9%

* 부족률=부족인원/(종사자 수+부족인원)×100

ㅇ 뿌리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490,936명이며 외국인근로자는 47,812명(9.7%)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합계
전체	43,231	80,856	101,623	150,902	95,260	19,063	490,936
외국인	4,501	4,647	10,092	14,219	12,786	1,566	47,812

2. 제도적 측면

ㅇ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지정, 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 기량검증, 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추천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쿼터 확대 등의 제도 지원을 통해 뿌리산업 외국인 숙련 기술인력 유입 촉진

ㅇ 뿌리산업은 일반 제조업 대비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추가 등 뿌리기업 우대 중
- E-9(비전문취업) 일반기업 대비 20% 추가 고용 허용
- E-7-4(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별도 허용 쿼터 마련

외국인 허용인원 / 업종별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10-49명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뿌리산업	5-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명 이상

3. 뿌리산업 외국인 제도 소개

ㅇ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사업
- 뿌리산업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을 선정,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기량검증*을 통해 기술인력을 선발, 뿌리기업에 취업 연계하여 체류자격 변경(D-2→E-7-4) 지원

  * 전공분야 지식, 학업성취도, 한국어학능력, 품성, 기술 전문성·숙련도 등을 평가
- 2015년부터 지정 · 운영, 현재 7개 양성대학(계명문화대, 전주비전대, 거제대, 아주자동차대, 군장대, 경기과기대, 영남이공대), 추가 지정 계획 有('22)
- 국내 뿌리기업에 숙련된 안정적인 인력 공급, 현지(베트남, 중국 등) 사업장 진출 도모 및 현지 관리요원 배치 계획

ㅇ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지원사업
- **(근로자 기량검증)**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기량검증을 통과할 경우 체류자격 변경(E-9→E-7-4) 심사 시 가점 획득

  * 직무관련 지식, 가치관, 품성, 현장수행 업무의 적정성, 숙련도 등을 평가
- **(고용추천서 발급)** 외국인근로자가 재직 중인 뿌리기업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E-9→E-7-4) 심사 시 가점 획득(최대 10점)

  * 우수 뿌리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내국인 고용창출 기업, 수출 참여 및 기술선도 뿌리기업,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영세 뿌리기업
- **(부처 추천 별도쿼터)** 뿌리산업 분야에 별도쿼터(연간 120명 규모)를 정하여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요건을 갖춘 자를 장기체류비자(E-7-4) 전환 대상자로 추천
- 우수한 외국 인력을 검증하고 전문비자를 연계하여 뿌리기업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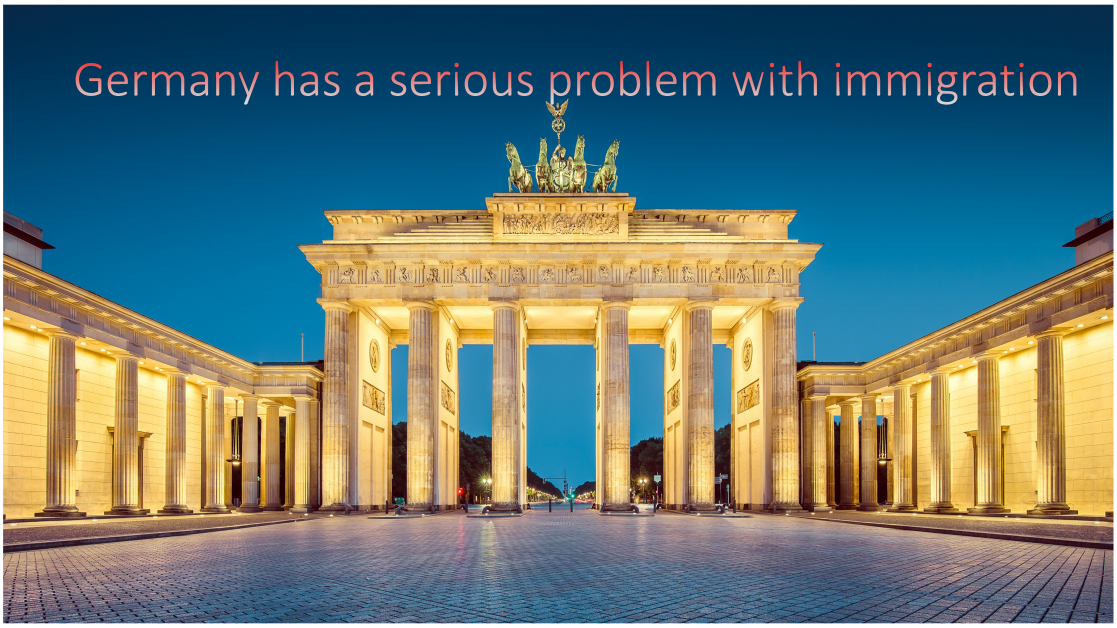
4. 육성형 이민정책

-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자 유입·활용의 바람직한 정책 제안
- 뿌리산업 외국인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D-2) 혹은 근로자(E-9)가 전문인력 범주인 특정활동(E-7)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 거주(F-2), 영주(F-5), 귀화로까지 갈 수 있는 정책적 제도 지원
-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질적인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육성형 이민정책

토론3

안톤숄츠 기자(독일방송 프리랜서)





We do not get enough of it!!



Some German numbers

- Germany birthrate is growing: 1,36 (2009) to 1,54 (2019)
- Still currently 1,8 million vacant job positions
- Germany needs at least 400,000 new immigrants per year to hold current status
- Germany ranks 12 (23) among OECD countries to attract talent
- New laws are issued to ease immigration (2012 and 2019)

Some Korean numb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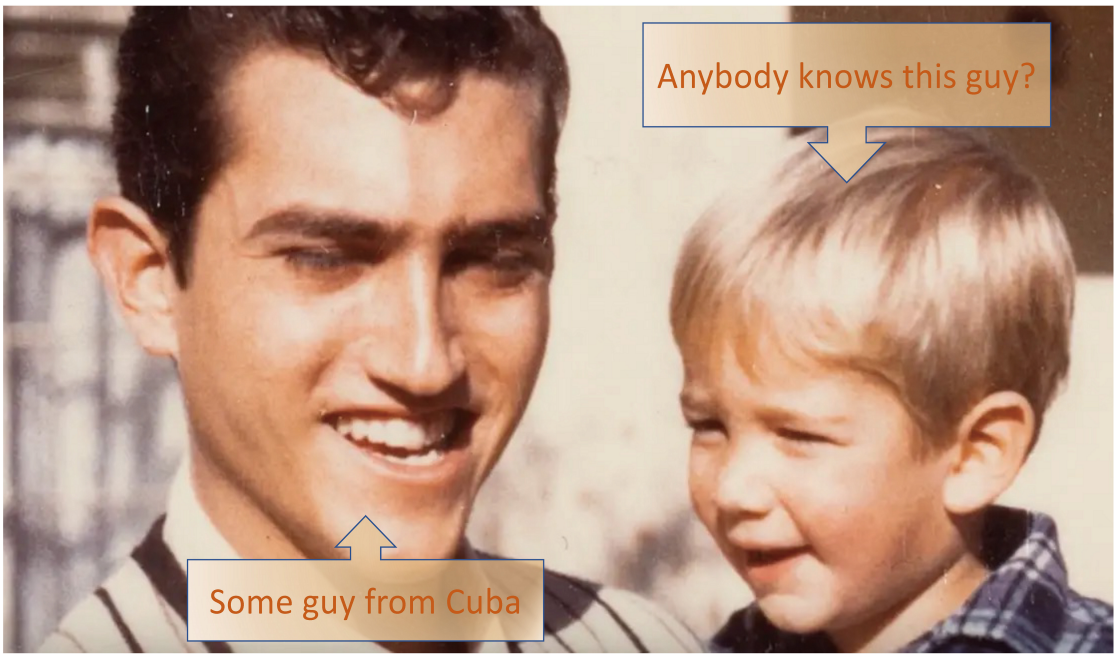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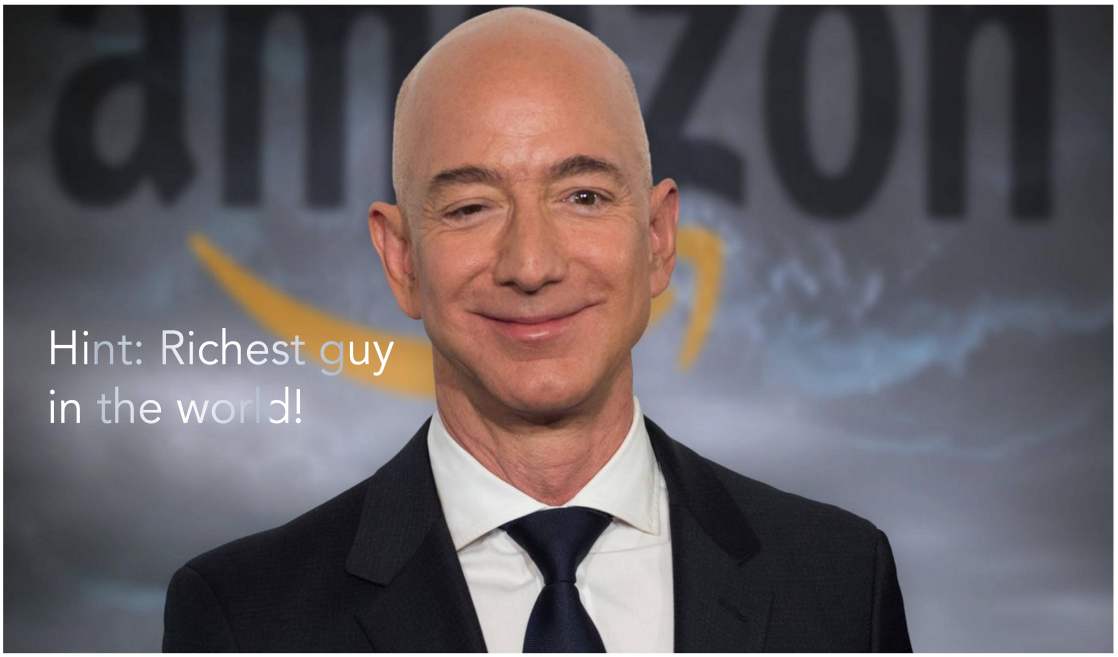
- Birthrate lowest in the world!
  From 1,3 (2012) to 0,75 (2022)
- 2019: Incoming migration of foreigners dropped by 11.5%, while their outgoing migration rose by 16.6%
- Foreign labour influx is decreasing while agricultural sector and manual labout industry desperately needs them
- Korea ranks 23rd among OECD countries to attract talent
- Youth unemployment rate at 7,78% (Germany 4,9%)



You know this company?
Hint: Most valuable company in the world!






Hint: Richest guy
in the world!


What, this guy is richer?
Ok, but he is also an
immigrant!

It is a global competion for talent!

„The movement of people across borders is as intricately linked with human existence as is the movement of goods—trade. Yet until now, people crossing borders have received less strategic attention from the business community than the movement of goods.

Boston Consulting Group
„Power of Human Migration in the 21st Century“





Winning people's hearts!

- But policy alone cannot be successful.
- You need to win the hearts of the Koreans first before you can win the hearts of immigrants!



Thank you!



토론4

주권과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외국인정책/이민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류병균 상임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1. 들어가면서

지난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의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겠다” 라고 공언한 후, 마치, 이민청 설립이 기정사실화된 듯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그에 따라 이민확대와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주장들이 언론과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6일과 9월 16일 여당인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인 이명수의원과 김형동의원이 각각 이민청과 국경이주관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민청이라는 독립 전담기구는 없었더라도 우리나라 이민정책과 이민행정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가 주무부처로 총리실 산하의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종합, 조정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새 정부 들어서 갑자기 이민청 설립을 밀어 붙이고 있는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고, 법무부를 비롯한 이민 관련 단체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이민청 설립 필요성도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이민청 설립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도 그 목적에 비추어 전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외국인 정책 및 이민정책은 그 무엇보다도 국익과 주권 그리고 국가안보가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민청 신설이라는 이슈와 관련하여 쏟아져 나오고 있는 수많은 전문가나 언구자들의 주장들에는 국익과 주권과 국가안보라는 가치를 언급하고 있는 주장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의 관련 법률안과 법무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외국인들의 인권보호와 그들의 편의증진이라는 가치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 내지는 이민정책의 기조가 근본적으로 잘못 설정되어 있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노무현 정권 때인 지난 2006년도부터 수립, 시행되어 오고 있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보면, 외국인정책과 이민정책이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면서 체류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정주하는 것을 전제로, 외국인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우리 사회에 통합시키 위한 사회통합 정책으로 외국인 정책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정책의 개념은 우리 헌법과 국제법적 상식에도 반하는 잘못된 것이다. 외국인정책과 이민정책은 엄격히 구분하여 이원화되어야 한다. 이민청이라는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로 잡아 외국인정책과 이민정책의 이원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후 이 글에서 필자는 위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 및 이민정책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과제를 제시하고, 지금까지 제시되고 있는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과 이민청 설립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주요 정책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간략히 개진해 보고자 한다.

2. 대한민국 외국인정책 및 이민정책 기조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2-1 문제점

노무현 정권 때인 지난 2006년도부터 법무부에서 수립하여 추진해 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보면, 외국인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상 개념]
>
>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 - 미래 우리사회의 인적구성을 결정하는 정책
>
>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상 개념]
>
>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 국민의 해외이주는 제외)을 의미
>
>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상 개념]
>
>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을 의미
> -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

위와 같이 외국인 정책을 이민정책,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체류목적과 체류기간이 끝나면 돌아갈 외국인 체류자와 대한민국에 귀화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이민자와의 구분이 모호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체류외국인을 우리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보고 사회통합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의 개념에 외국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등의 정책적, 행정적 혼란과 오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Immigration' 이라는 용어가 국제사회에서 내외국인의 국경(Border) 통과와 이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기는 하나, 우리 정부의 정책적, 법률적 용어로 사용할 때는 혼란과 오해가 없도록 외국인 정책과 이민정책은 개념상 명확히 구분하여 정책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볼 일을 보고 출국할 때까지 그 체류 목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국제법과 조약에 장한 바 대로 보호해 주는 정책으로, 이민정책은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을 선별하여 귀화시키고 정착,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분하여 이원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정례적, 대규모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그 대부분이 저개발국의 저소득층들인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민 그리고 주로 중동과 서남아시아의 분쟁지역 이슬람 국가 출신이 많이 포함된 난민신청자 등 인데,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은 주로 이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저개발국의 저소득층을 외국인노동자, 난민신청자, 결혼이주민 등으로 정례적. 대규모로 받아들여 이들을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들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막대한 서회적 비용을 감당하느라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외국인정책 및 이민정책의 실상인 것이다.

2-2 개선과제

1) 외국인 정책과 이민정책의 분리, 이원화

우리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인은 국민과는 달리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혹은 선택적으로 그 지위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외국인은 헌법 상 우리 국가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국가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해 주는 자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 헌법 제6조 2항의 취지는 우리 헌법뿐만이 아니라 국제법상의 일반 상식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8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미국 시민만이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외국인은 '그 정의상 당연히 지방자치정부의 통치하에 있는 자들로 구성되는 사회의 외부에 있는 자'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내의 외국인들은 많은 실질적 이익을 누린다. 인신보호영장을 요구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보상 없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한다는 자체는 '권리가 아니며 단지 허가 혹은 용인된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든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한다는 따위의 밥무부 외국인정책의 발상은 우리 헌법과 국제법적 상식에 반하는 감상적인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상 개념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는 규정에서 주민의 범위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의 대상도 아닌 외국인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그리고 선거법상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한 규정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체류목적과 채류기한이 종료되면 돌아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정책

과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정주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정책은 처음부터 그 방향성과 체계가 달라야 하는 것인데도, 이를 하나의 정책으로 혼용함으로써, 사회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외국인들에까지 사회통합을 해야 한다며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해 왔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지 선별하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로, 그 대부분이 이미 입국해 있는 저개발국의 저소득층인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민,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영주권과 국적이 부여되는 실정이다. 띠라서, 이와 같이 외국인정책과 이민정책이 혼재된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은 채로 이민청이 신설된다면 위에 지적된 문제들이 더욱 확산, 고착화될 것이기에, 이민청을 신설하더라도 외국인정책과 이민정책의 분리, 이원화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다.

2) 이른바 3D 업종과 농어촌 계절노동 인력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맹목적인 외국인 의존 탈피

이른바 “3D 업종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려 하지 않는다” 는 주장은 언론과 업계가 만들어 낸 거짓 프레임에 불과하다.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은 3D 업종이라는 이유로 노동을 회피한 적이 없다. 3D 업종이라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임금수준과 근무환경에서는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우며, 이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한 달 임금은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1년을 일해도 벌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이므로 근무환경이 어떠하든 전혀 개의치 않고 기꺼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3D 업종의 노동력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외국인 노동자부터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그런 업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임금을 현실화 시켜 주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농어촌지역 계절노동자 부족 문제도 국내 유휴인력과 실업자들을 활용하거나 농촌과 도시간의 협력사업, 학교와 사회단체의 봉사 프로그램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맹목적으로 그리고 과도하게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외국인 중독현상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향후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은 갈수록 생산현장에서 멀어져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고 우리 산업현장과 농어촌의 일자리는 외국인들이 장악하여 그들이 벌어들이는 연간 수십조 원의 돈이 해외로 빠져 나가게 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왜곡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원인이 될 것이다. 노동자가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받는 임금은 시장에서 소비로 지출되거나 은행에 저축됨으로써 산업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일자라만 차지하고 돈은 그 대부분 해외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또한 농어촌 계절노동자들과 산업현장의 노동자들 중 상당 수는 당초 입국조건을 어기고 일터를 이탈하여 수도권으로 유입, 불법체류를 하게 되고, 고용주는 이로 인한 일손 공백을 메꾸기 위해 또 다시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와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3) 국제결혼 중개업체나 브로커에 의한 매매혼이나 다름없는 속성결혼 제재로 진정성 없는 결혼이주자들의 입국 억제

국제결혼 중개업체나 브로커를 통하여 하는 국제결혼의 상당 수가 결혼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하는 진정성 없는 결혼, 사기결혼이 많으므로, 이러한 중개업체나 브로커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로 인한 결혼비자 신청 건은 배우자간의 경제적인 능력, 연령 차이, 결혼횟수, 한국어 능력 등 비자발급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변경함으로써 진정성 없는 결혼으로 하는 편법입국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한국인 배우자들의 피해를예방할 필요가 있다.

4) 현행 난민법을 전면 개정하여 난민신청을 국내가 아닌 재외공관에서만 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난민법 상의 독소조항을 이용하여, 난민 신청을 통한 국내 입국 및 장기체류를 원천 봉쇄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은 난민협약에도 없는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 라는 법적 지위를 규정함으로써, 난민 신청만 하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난민 신청자의 상당수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사실상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에 입국 및 장기체류 혹은 불법체류 중 사실상 체류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노리는 가짜난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행 난민법 상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난민신청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하는 현행 난민법을 전면 개정하여 재외공관에서만 난민신청을 하게 하면, 가짜난민들의 입국과 그들을 돕기 위한 브로커들의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상 4가지 과제가 선행되지 않은 채로 이민청을 설립한다면, 현존하는 문제들은 더욱 확산, 고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번하므로, 이민청을 설립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제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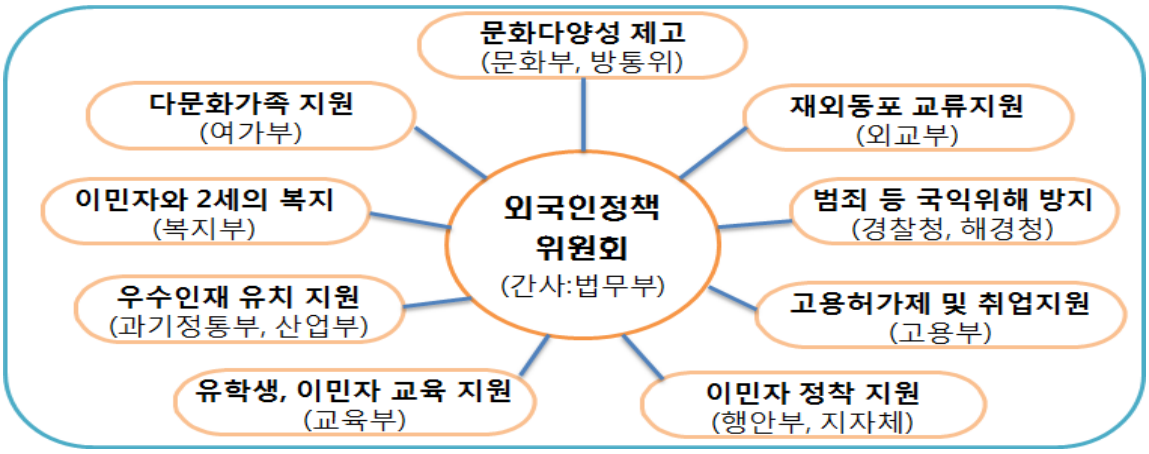
3.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 및 이민청 설립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의 불합리성

3-1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민청 신설 이유로 외국인 정책, 이민정책을 총괄할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외국인정책 및 이민정책의 콘트롤 타워는 총리실 직속의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고유업무이며, 외국인들에 대한 체류지원과 보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이민청이 설립된다고 해서 위와 같은 업무를 이민청이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처 간의 업무혼선과 이해관계 충돌, 그리고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총리실에서 종합,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민청을 별도 외청으로 확대 신설하는 것은 전혀 필요

하지 않으며, 이는 또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조직과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출처; 법무부

2) 선진화된 수준 높은 이민정책을 위해서 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이민 선진국들은 이민정책과 행정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설계하고 있다. 선진화된 수준 높은 이민정책을 위한다면 위와 같은 이민 선진국들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은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국경 통합관리체계인 CIQ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캐나다와 호주도 미국을 벤치마킹하여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CIQ 란, Customs(세관), Immigration(출입국심사), Quarantine(검역)의 약자로 출입국시에 공항 및 항만에서 행하는 통합된 국경통과절차를 말한다. 미국은 2003년도부터 종전 재무부, 법무부, 농림부로 나뉘어져 있던 관세청, 이민국, 검역청을 국토안보부로 통합하여 관세국경관리국(Customs Board Protection Service)과 이민관세수사국(Immigration Customs Enforcement)이라는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2003년부터 공안부를 신설, 국경청(Customs Board Agency)이라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호주 또한 2008년도 부터 내무부에 관세국경관리청(Customs Board Protection Service)이라는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인권보호와 외국인 편익 증진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 이민청 설립안과는 기본개념과 목적부터 다른 통합적인 국가안보시스템이다. 그 밖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가들도 모두 내무부에서 이민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및 중국과 정전상태에 있는 국가로서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국가이며 일본과도 과거사 문제와 영토문제로 언제라도 분쟁이 촉발될 수 있어서 이 지구상에서 그 어느나라 보다도 군사안보상의 긴장과 위험요인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이민정책과 행정도 위와 같이 국가안보를 우선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차제에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면 이와 같은 국가안보라는 틀 안에서 통합적인 국경통과 시스템을 설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2. 이민청 신설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의 불합리성

지난 7월 26일, 한동훈 장관이 윤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한 내용에 의하면, 새로 설립될 이민청관련한 이민정책 추진과제로, 특히, 인구소멸지역을 외국인으로 채우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신설, 과학기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영주 및 국적 패스트트랙제 시행, 국내출생 이민배경 아동의 등록 등이 눈에 띈다. 이 밖에도 한동훈 장관 부임 이후, 법무부는 농어촌 지역 일손 부족 문제 해결할 계절근로자 대폭 확대를 공언해 왔다

우선, 인구소멸지역을 외국인으로 대체하여 해결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 부터가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국민이란 부족하면 외국에서 수입하여 채워 넣어도 되는 대체재가 아니다. 즉, 국민이란 숫자가 모자라면 외국에서 수입하여 보충해도 되는 물건이나 개, 돼지와 같은 가축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nation)이란 머리숫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하나의 공동체의식과 문화적 정체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외국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은 물건이 아니라 인권과 정체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 자체 부터가 헌법 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어 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헌법 그 어디에도 우리의 다음세대와 미래를 외국인으로 대체하여 이어 가도 된다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헌법전문을 보면, 우리 국가의 궁극 목표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이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헌법 본문 여러 곳에서 국가의 계속성과 동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구가 격감한다고 해서 외국인들을 대규모로 그리고 정례적으로 유입 시켜 나간다면, 오히려 서민들의 삶은 유입된 외국인들과의 경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한국인들의 인구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여 한국인들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하여 소멸해 간다면 그것은 이미 대한민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 고용허가제로 16개국에서 정례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하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들의 태반이 몇 년 일하다가 정해진 직종을 이탈하여 불법체류하면서 보다 수월면서도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직종으로 이동하고, 그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정부는 그에 대하여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법무부가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는 농어촌의 계절노동자 역시 50% 이상이 무단이탈하여 수도권으로 유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로 인한 심각한 노동시장의 왜곡과 교란현상에 대하여는 외면한 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단이탈한 계절노동자들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또 다시 계절도동자들을 들여와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구소멸지역에 외국인들을 채워 넣는다고 해도 그 외국인들은 얼마안가 그 지역을 이탈하여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이주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그러한 현상을 막을 마땅한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소멸지역을 외국인으로 채워 넣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라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공허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될 경우, 특정한 외국인들이 특정한 지역에 몰려 그들만의 집단과 공동체를 이루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특정지역에 중국인들이 거대한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거나, 이슬람 사원

을 중심으로 이슬람 공동체가 형성되면 그 지역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행사가 어려워지고, 해당 국가가 자국민 보호라는 구실로 내정간섭을 하게 되면,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도,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대규모로 이주해 있는 러시아인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영주 및 국적 패스트 트랙제 시행제도 역시, 앞뒤 우선순위가 뒤바뀐 면이 있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서 영주권과 국적을 쉽게 퍼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대우와 근무조건, 그리고 그들의 장래를 보장할 환경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 우리 대한민국은 오히려 국내에서 배출되는 얼마 안되는 핵심 인재들 마저도 더 높은 보수와 좋은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외국에 싹쓸이 당하듯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 기업들의 투자. 증설로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 최근 2년간 이공계 해외취업이 60%나 급증하였고, 국내에서 키운 우수 외국인력도 우리나라에서의 근무를 마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영주 및 국적 패스트트랙 제도는 이와 같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엉뚱한 대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내출생 이민배경의 아동의 등록이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사실상의 속지주의를 채택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인 아동들에게 국민과 동일한 교육과 복지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 1항,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 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자신의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유엔과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사안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대한민국에 눌러 앉아 공짜 복지에 편승하려는 외국인들의 불법입국과 체류를 부추기고,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또한 외국인의 아동이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였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그들의 출생등록을 받아 줌으로써 국적을 부여할 필요는 전혀 없다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등록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 대사관에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청 설립과 관련한 위와 같은 정책들은 그 모두가 전혀 실효성과 현실성이 없는 데다가 오히려 불법체류를 부추기는 위험하고도 무책임 정책일 뿐이므로 폐기해야 마땅하다.

4. 나가면서

법무부는 위와 같은 비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우선 4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을 어떻게 검거하고 추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헌법과 법치행정을 그 누구보다도 강조해 온 한동훈 장관이기에 우리나라의 국경과 주권을 무시하고 체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중대 범죄자인 불법체류자들을 여느 정권 때와 같이 외면하면서 방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인구격감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정책과 연100만 건에 이르는 낙태를 방지하여 이를 출산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전향적인 제도개선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노동력 부족 문제도 국내유휴인력과 실업자들로써 외국인노동자를 대체하는 방향의 정책을 모색해야지 무조건 외국에서 노동력을 수입하는 데에 의존하다가는 결국에는 유럽국가들과 같은 국가 정체성 소멸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4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 대책에는 묵묵부답이면서 선진이민행정을 위한다며 이민청을 설립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 자체가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민청 신설 문제는 서두를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전제조건들을 먼저 해결하고 선진적인 시스템의 설계와 소프트 웨어가 준비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토론5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와 이민정책의 방향

정영섭 사무국장(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1. 이주민의 기여

- 기여 여부를 중심으로 이주민 정책 혹은 이민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마치 선량한 이주민과 그렇지 않은 이주민을 가르거나 경제적 도움이 되는 이주민과 그렇지 않은 이주민을 구별해서 차별하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계해야 할 관점일 것임. 그러나 보통 이주민에게도 동등한 권리 보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할 때 돌아오는 반론으로, '이 사회에 무슨 기여를 했냐', '차별적 대우라도 감지덕지할 것이지, 싫으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식의 즉자적이고 혐오적인 반응이 횡행함. 따라서 이주민들이 사회와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알리는 것은 인식 정정을 위해서 필요할 것임. 이주민의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해야 함.

1) 노동력 형성

- 이주민, 특히 이주노동자는 짧게는 몇 개월(계절노동자)에서 길게는 10년 혹은 그 이상 한국에서 일하며 노동 그 자체로 산업과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주노동자가 노동력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본국에서 거치며 한국사회는 이에 관여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아님. 즉 근본적으로 본국에 노동력 형성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임.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효과 등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늘 생략되어 왔는데, 다시금 확인되어야 할 것임.

2) 경제적 기여

- 국제적으로도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기여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다고 보여짐. OECD 25개 회원국의 2006-2018년간 이주의 재정적 영향 검토 결과, 모든 국가에서 이주민들의 순재정 기여도가 플러스였고, 이주민은 정부가 그들을 위해 사회보호, 건강 및 교육에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 및 사회보험 분담금으로 기여하고 있었음. (「2021 OECD 국제이주전망 주요 내용」, 주OECD한국대표부, 2021)
- 국내의 경우, 이주 노동자의 2010년 국내 총생산(GDP)유발효과는 약 29.5조로 국내 전체 총생산(GDP)에 1.08% 기여,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9.9조로 전체 부가가치에 0.98% 기여(「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민정책연구원, 2011), 2016년 총효과는 74.1조 원으로 추정(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8.8조원, 생산유발효과 55.3조 원), 2026년에는 부가가치 유발효과 41.3조, 생산유발효과 121조 등 총효과 162.2조 원으로 추정(「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효과」, 이민정책연구원, 2016)

-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의 하나가 인력난 문제였음. 중소영세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어업, 건설업 등을 가리지 않고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업종 전반에서 인력난으로 아우성이었음. 이는 역설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권리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기 짝이 없음.
- 이주노동자들은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떠받치고 있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외국 인력 쿼터를 더 늘려달라', '우리 업종에도 외국인 고용 허용해 달라'는 이야기가 늘 제기되고 있음. 그간 이주노동자가 없었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임.

3) 세금 기여

- 이주민의 세금 납부액은 2017년 총 1조 5천억 가량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 7천7백억, 종합소득세 3천6백억 등이었음. 2020년 근로소득세는 9천 6백억(5십4만5천여명, 종합소득세는 5천 7백억(1십2만9천여명)으로 훨씬 증가했음.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참조) 여기에 더해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도 내고 있음.

4) 사회보험 기여

- 잊을만 하면 한번씩 정부와 정치권, 주류 언론에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사례 운운하며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왔으나, 실상은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음. 최근만 보더라도 2018년 2255억원, 2019년 3658억원, 2020년 5729억원, 2021년 5125억원 등 4년간 총 1조6767억원의 누적 흑자임.(「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8) 오히려 이주민 지역건보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차별, 세대합가 차별, 체납 시 보험급여 차별 및 체류자격 불이익 등 여러 차별 상황에 놓여 있음.

5) 지역사회 활성화

- 쇠락한 지역사회에 이주민 주민이 늘어나서 활성화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음. 기초지자체별로 보아도 인구의 5퍼센트 이상이 외국인 주민인 곳은 60여 개(「2020 외국인주민현황 설명자료」, 행정안전부, 2021)이며 10퍼센트 이상인 곳은 9곳으로, 가장 높은 곳은 14.6%에 달하는 충북 음성군임. 이러한 지역은 이주민 주민의 증가로 인구 유지뿐 아니라 생산과 소비활동 증대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 효과도 얻고 있음. 이 외에도 이주민들의 존재와 그 문화의 영향은 사회의 문화다양성 풍부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2.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1) 반성과 성찰부터

- 이민정책이라고 할 만한 정책은 사실상 부재했음.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출입국 및 체류 관리와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관리·통제 정책'이었고 다문화정책으로 포장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일방적 동화정책이었음. 정부는 수십 년간 소위 우수인재나 투자자 우선의 유치 정책을 폈지만 이주민 친화적이지 않은 한국사회에 그런 사람들

이 정착할 매력이 별로 없었음. 반면에 다른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유학생, 한국계 이주민 등은 한국사회의 필요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했음. 정작 한국사회가 필요로 한 대상은 이들이었는데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정착 불허와 단기 순환,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신속한 한국인 만들기 동화정책, 한국계 이주민에 대해서는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중심으로 한 약간의 시혜적 정책,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제와 추방 정책, 난민에 대해서는 인정 최소화 정책을 펼쳐 왔음. 그 과정에서 비서구 지역 출신 이주민들은 때로는 잠재적 미등록 초과체류자, 때로는 잠재적 범죄자, 가짜 난민 등 부정적으로 인종화되었음. 이러한 정책 역사에 대한 반성적 평가에서 출발해야 할 것임.

2) 기존의 잘못된 정책 근본적 개선으로

- 이주의 역사가 수십 년에 이르면서 여러 영역에서 이주민 대상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음.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제한, 열악한 기숙사, 과도한 숙식비 공제, 높은 산재사망율, 낮은 의료접근권 등 강제노동과도 같은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음. 농어업 분야의 이주노동자들은 특히나 열악함. 또한 3~5개월 일하는 단기인력을 공급한다는 명분하에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계절근로제도는 지자체가 해외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계절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현지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부재, 언어나 권리교육 부재, 이탈보증금 설정 등 여러 이유로 피해가 발생하고 문제가 커지고 있음. 이주여성들은 젠더기반 차별과 폭력 피해를 당해도 불안정한 체류상태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다문화가족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공공영역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의 임금과 고용 차별도 계속되고 있음. 난민인정율은 세계 최저수준이며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신청자는 역시나 불안정한 체류상태에서 노동을 통한 생존도 어려움. 더욱이 난민면접조작 사건, 외국인보호소 내 새우꺾기 고문 사건 등에서 보듯이 정부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하는 상황임.
-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정책 개선이 있어야 미래 이민정책을 그리는 의미가 있을 것임.

3) 이민정책은 비차별·권리기반 접근으로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동력 감소, 기존 행정 체계의 복잡과 비효율 등에서 출발해서 이민정책과 정부조직 신설을 접근하는 것에 앞서,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차별 없이 개척할 수 있도록 이주민의 시각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임. 이는 이주민이 그동안 겪어 왔던 차별적 정책을 평등한 정책, 권리보장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임. 예컨대 코로나 시기에 이주민들이 겪은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가 재난지원금이었는데 중앙정부는 내국인과 가족을 이루고 있거나 내국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근거로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로만 대상을 제한했음.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주인권단체들의 진정에 따른 국가인권위의 권고 후에야 대상을 넓혀 지급했고, 그 외 광역·기초지자체들은 대부분 정부 기준을 따랐음. 세금, 사회보험 기여, 각종 방역의무를 다 이행했어도 배제된 것에 대다수 이주민들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음. 코로나 초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많은

이주민들이 마스크 구매에서 제외되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도 못했음. 이주노동자들은 바이러스 전파자로 낙인찍혀 사업장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급기야 여러 지자체에서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이 시행되기까지 했음. 백신접종 과정에서도 예약 사이트가 한글로만 되어 있었고 미등록이주민들은 그나마도 해당되지 않았으며 여러 문제제기 끝에 지역 보건소에서 등록하고서야 백신접종이 가능했음. 코로나 이후 이민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면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대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임.

4) 장기체류, 체류안정 보장으로

- 이주민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체류의 불안정일 것임. 이주노동자는 10년을 일해도 단기순환 노동정책으로 인해 장기체류와 정착의 통로가 거의 없고 취업 기간 내의 체류 연장도 오로지 사업주에게 달려 있음. 결혼이주민은 결혼이라는 상태에서 벗어나면 체류가 불가능 혹은 불안정해짐.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언제, 어떤 이유로든 체류권을 상실할 수 있음. 미등록이주민들은 상시적인 불안 상태에 있음.
- 이주노동을 통한 장기체류 통로 마련, 결혼이주민, 난민(신청자) 등의 안정적 체류권 보장,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체류안정화 정책 등이 절실함.

5) 선주민 사회의 변화를 동반해서

- 지금까지의 이주민 대상 정책 가운데 사회통합 정책은 사실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익숙해지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왔음. 이주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 한국법과 제도를 배워서 한국사회에 따르는 것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그런데 그만큼 이주민과 함께 사는 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해왔는지 생각해 보아야 함.
- 지역사회에서 노동자, 주민으로 살아가는 이주민들과의 사회적 교류, 접촉을 확대하고 선주민들도 이주민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할 것임.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존중, 상호이해 등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과 사업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학교, 사회단체, 미디어 등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6) 포용적 이민정책 구현으로

-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부처 신설 방안이 논의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출입국정책, 외국인정책 등을 관장해 온 법무부의 문제는 큼. 법무부는 비자를 통해 이주민들의 체류를 좌지우지하며 관리와 통제, 처벌 등을 중심으로 기능해 왔음. 기존의 이주민 차별적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체류권과 노동권, 사회성원권, 주민으로서의 권리 등 권리기반의 접근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상호존중과 교류를 통해 향후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면, 이를 구현할 수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존 법무부 통제 관리 기능과 체계를 확대하는 식으로 가는 방식은 결코 안될 것임.

토론6

윤현규(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국민참여단)

“불법체류자의 국적 별로 그 숫자를 알고 있는가” 조경태 의원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4년 전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잘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일국의 국무총리가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불법으로 얼마나 체류하는 지도 모르는 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실제로도 그 당시 불법체류자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습니다. 현재는 과연 나아졌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통계는 역시 암울한 현실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고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좌우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정치권의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정책 세미나가 개최된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최하신 조정훈 의원께서 이민에 긍정적인 입장이고 법무부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실시하는 등 외국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 세미나가 포용적 이민 정책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권, 언론 등 거의 모든 곳에서 강조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펴야 한다고. 그런데 조정훈 의원의 불법체류자 대사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논리가 구조적으로 끊겨있는데 처음에는 불법체류자의 범죄, 계절 근로자의 도망 등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부작용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는 대사면을 뜬금없이 얘기합니다.

불법체류자를 대사면 하는 것이 역발상이라는 주장이신데 그러면 범죄자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대사면하는 것 또한 역발상아닙니까? 그 노동력을 왜 안 쓰고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까? 이러한 저의 비유는 불법체류자를 범죄자라고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본인께서도 언급하신 태국 마약사범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마약은 무조건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 범죄를 신경써야하는 부분인데 친남방정책으로 인해 태국 무비자를 통해서 들어온 태국발 마약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대사면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조정훈 의원의 주장은 조정훈 의원의 말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법치주의의 유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데 국민이 납득하기를 바라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입니다. 법은 하나의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지켜왔던 약속을 깨면 신뢰를 잃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계절근로자 제도가 근로자들이 도망간다고 비판하시더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자고 하시는데 불법체류자는 뭐가 다릅니까?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해서

고용하면 안 도망갑니까? 계절 근로자가 무엇 때문에 도망간 지 아십니까? 더 많은 급여와 더 쉬운 일들이 널려있으니 그 쪽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들이 불법으로 체류해서 도망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체류자의 합법화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불법체류자들은 준법정신이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된 것인데 사면을 해주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더 많은 불법체류자들을 불러올게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방역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면서 백신 접종률이 25%라는 점을 근거로 드셨는데 그러면 불법체류자 단속률이 10% 미만인 것은 괜찮습니까? 단속을 제대로 했으면 백신 접종을 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되면 접종률이 높아지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 아닙니까? 또한 접종 시 불법체류 단속을 안하겠다고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불법체류자여서가 아니라 백신에 대한 불신이 있거나 나이가 젊어서 안 맞았다든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곤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방역을 불법체류자 합법화로 해결하겠다니 이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대사면의 근거 중 주로 경제를 강조하시는데 설사 합법화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경제가 사회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이민정책은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성격상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지 단순히 주판 튕겨가면서 계산적으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존재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해외로 급여를 송금합니다. 2017년 기준 해외 노동자가 해외로 보낸 급여 액수가 자그마치 18조원입니다. 심지어 2017년은 불법체류자가 30만명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액수가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합법화는 결국엔 도돌이표입니다. 합법화를 한다고해서 급여를 송금하거나 이탈하여 일자리를 벗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를 합법화 시킨다고 그 일자리의 환경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건설현장도 농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슈화 되는 분변 아파트 왜 생깁니까? 이렇다 할 복지 없이 임금이 싼 불법체류자 고용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일하는 환경 자체가 나아지질 않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들 스스로도 임금만 맞춰주면 얼마든지 일하는데 뭐하러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야 인건비가 비싼 나라에서 벌고 물가가 싼 나라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 이득이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내수경기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파키스탄 기준 노동자들의 우리나라 연봉이 5억씩 벌어가는 격이라고 합니다. 파키스탄 인구가 무려 2억이 넘습니다. 게다가 파키스탄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죠. 그 많은 노동자가 우리나라로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고용허가제와 불법체류자 단속 등 상식적인 것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그래도 자국민은 3d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 3d 일자리는 더욱 불법체류자가 점령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외국인들이 점령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1,2차 산업이 외국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역시도 노

조 설립이 가능한데 지금도 노총에서는 자국민을 고용하라 시위하고 있는 마당에 불법체류자들끼리 연합하여 노조를 형성하고 그 규모가 커진다면 분열과 갈등만 더 커지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체류자가 합법화되어도 여전히 비자와 관련된 범죄가 일어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장 결혼이라고 귀화를 손쉽게 얻어 내기 위해 한국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몇 년뒤에 이혼하는 범죄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범죄도 일어나고 브로커가 되어 다른 외국인 노동자에게 알선하는 등 온갖 문제들이 부수적으로 발생합니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적취득지원금이라고 국적을 취득만 해도 100만원이 넘게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가 범죄를 예방하기는커녕 간접적으로 부추기는 셈입니다. 실제로 국적을 얻으려면 한국여자를 임신시켜라라는 매뉴얼이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방송국에서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법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에게 잠식된 지역은 하나의 타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경제적인 사이클이 돌아가니 국가 입장에서는 전혀 이득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의 예가 제주도 특별자치구입니다. 제주도는 무비자를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방했고 관광도시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중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오히려 소비를 하기는커녕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파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범죄율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되어버린지도 오래입니다.
또 이들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그대로 그 나라의 지역이 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외국인 타운이 하나 둘씩 늘어가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겪고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시작은 노동력 부족 문제에 있는데 합법화는 노동력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법체류자가 단순 노동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적인 매춘에 종사하는 이들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약사범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는 이들도 다수가 불법체류자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다 합법화 시켜주면 뒷일은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외국인 범죄에는 국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범죄는 예방이 최우선인데 외국인이 사전에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강력범죄율의 비율은 외국인 범죄가 내국인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살인 같은 경우 내국인의 2.5배 가량이고 강간은 파키스탄 5.97배 방글라데시 3.2배 키르기스스탄 2.83배인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치안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상식적으로 단속이 안된다면 단속인력을 늘리는 게 정상인데 왜 인력을 못 늘리며 경찰권한은 왜 줘봤자 색출하기 힘들다고 단정을 짓는지 논리적 근거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와 국가적인 체제가 비슷한 일본이 불법체류자가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10분의 1수준

인데 그럼 일본은 불가능을 가능케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농촌인력이 부족한 것을 마치 전체 대한민국의 인력이 부족한 것처럼 말씀하신 면도 있는데 오히려 분야에 따라서는 자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면도 있습니다. 탁상행정만 할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나가보고 어느 분야에 노동력을 얼마만큼 투입해야 할지 혹은 오히려 자국민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는지 알아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정훈 의원의 주장은 단순노동력이 모든 걸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4차산업혁명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2020년대에 매우 시대 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이 역시 미래가 아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패스트푸드점, 카페, 목욕탕 등 편의시설에 키오스크가 생긴지 오래고 농장은 스마트팜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e마트 24시가 주류 무인판매를 작년에 도입했고 중국은 이미 상품을 qr코드로 확인하고 일본은 아예 로봇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등 시장의 흐름은 이미 자동화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단순노동력에만 치중하는 것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흐름에 너무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투자해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은 일자리의 구조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단순노동인력이 r&d분야의 고급인력으로 대체되는 시기입니다. 고급 일자리를 선호하는 자국민의 특성상 이는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를 오히려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이 점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이민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원인은 내부에 있는데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미봉책만을 고집하는데 어떻게 부작용없이 이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일할 사람 없어서 외국인을 반드시 써야 한다라는 구시대적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불법체류자가 나간 만큼 머릿수를 채워 돌려막기를 한다는 1차원적 사고에 머물러 있어야 하냐는 말입니다.

지금은 불법체류화 합법화가 아니라 고용허가제를 제대로 운영해야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선진국의 고용허가제를 전혀 못따라가고 있습니다.

농촌의 문제는 단순히 농촌의 문제가 아닌 식량 안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의 문제는 이제 안보의 시각으로 봐야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줄 지키듯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농촌인력문제는 불법체류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도시의 구직자 중에서 희망자를 선발해 실습교육을 거쳐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일자리를 연계시키려는 시도,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통해 농번기와 수확기 등 일손이 집중되는 시기에 영농현장에 상주하며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

기업체, 공공기관, 군부대, 대학생, 구세군, 농협 퇴직자 등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다각적인 인력 지원 방안도 전개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농촌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식량 안보를 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킨다는 신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일을 하고싶어하는 은퇴인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을 나이제한으로 국한시키지말고 어느 정도 테스트를 거치거나 경력이 인정되면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지든 농기계든 귀농지원금이든 어떤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지원을 하여 농촌 일자리의 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그럴 생각은 않고 외국 인력을 어떻게 쉽게 들여올까만 생각하니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고쳐지겠습니까? 이러니 계절근로자가 도망가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문화 지원은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자국민은 청년창업농조차도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고려합니다. 가진 게 땅밖에 없는 귀농자가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연 이자율 2% 정도의 융자 뿐입니다. 빚쟁이가 되라는 겁니다.

단속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는 것이 선행되지 않고 아니, 최소한의 지켜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자는 소위 무법지대를 만들자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의 이민정책을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과거를 거울삼아 그 실책을 고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외국인 문제는 평생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토론의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역사는 일방적인 개방의 역사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전 대통령들의 언급을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피를 섞는 것도 세계화 이명박 전 대통령 다문화 가정 지원 확대 시급, 실제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정.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다문화 지원 강화 전해 문재인 전 대통령 다문화 가정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 다른 조건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다 윤석열 다문화 비서관 등용, 공약에 다문화 지원 포함. 이렇게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지원을 얼만큼 해줘야 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있고 그 지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적인 대통령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다문화가 마치 성역화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제 1세계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민에 반대하는 주장은 한계가 있는 반면 개방하자는 주장은 그 정도에 한계가 없습니다. 다시말해 유입의 차단은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는 반면 개방은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한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계가 없으니 더 주의깊게 생각해야 될 것을 여태까지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라는 이유로 이민의 숫자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다문화 예산은 상승곡선을

그려왔고 그것이 한부모가정 지원 역차별이라고 지적이 됐었지만 별다른 변화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예산의 파이 뿐만 아니라 소득의 재분배 원칙을 무시하고 있단 점도 문제가 되는데 500억 자산가가 다문화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소득의 재분배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그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국가가 그 정책에 그만큼 치중을 한다는 것인데 현재 치중해야 될 곳이 다문화인가, 즉 이민인가, 저출산인가? 이 둘의 관계는 약한 반비례의 관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이민을 들여서 노동력이 충족되면 더 이상 출산율을 높이자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1인가구지원, 성인지예산, 다문화예산 등 자국민의 출산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전체 예산도 프랑스의 반의 반토막도 안됐고 oecd 평균 저출산 대책예산에도 못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예산의 행방 자체도 문제입니다. sw인력양성, 템플스테이, 청소년 성범죄예방 등 저출산과 하등 상관없는 곳에 예산이 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출산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문화는 여가부라는 중앙 컨트롤타워가 있습니다. 저출산 분야는 없습니다. 이거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 아닙니까? 자국민의 저출산에 제대로 된 연구도, 투자도, 노력도 되지 않은 채 인구절벽현상이 오자 이민정책을 실시하겠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입니다. 내 나라 내 백성이라는 의식도 없이 자국민도 못 챙기는데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21세기에 자녀 양육은 억대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창원시가 그에 달하는 액수를 지원해준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시 창원시의 보증으로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1자녀 출산시 이자 면제, 2자녀 출산시 대출원금 30% 탕감, 3자녀 출산시 전액 탕감하는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면 효과를 못보는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지금 정책의 기조가 여성단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할 노력도 의지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연수생으로 온 스리랑카 a씨 여대생 집단강간, 여대생은 화물차에 치여 숨져. 방글라데시인 3명 13세 소녀 꾀어내 성폭행 이러한 사건이 한번이라도 강남역 살인사건, 신당역 살인사건처럼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대규모 시위로 이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남녀갈등의 끝은 자국민 남녀끼리 싸우는 사이 저출산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이민정책으로 이어지는 외국인 잠식밖에는 없습니다. 외국인 남성은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논리도 아니고 도대체 이 무슨 기이한 사회적 현상이란 말입니까? 정치권은 이런 남녀갈등을 지양하기는커녕 한쪽 편을 들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정책 분야에 관해 목소리를 내는데에 있어서 다문화 쪽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그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권위, 여가부, 난민법, 무비자제도, 계속해서 발의되는 체류 허들을 낮추는 법안, 인권 변호사, 행정사 등 정부차원에서 한쪽으로 밀어주다보니 항상 외국인 입장에서만 생각되어지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법안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자국민 우선인 중앙부처가 있습니까? 다문화 센터만 있지 자국민 출산 지원 센터가 존재합니까?

한국인 없는 한국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보통 전체인구의 5%이상이 외국인이면 다문화 사회라고 칭합니다. 5%, 현재 대한민국 외국인의 비율입니다. 현재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 중 일부는 정착하여 출산까지 한다. 그에 비해 자국민은 본질적으로 들어온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국민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출산 단 한가지 뿐인데 이민으로 들어오는 숫자를 생각하면 한국인의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인 없는 한국, 이자스민 의원 말대로 한국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라고 봐야합니다. 이를 정치인이 앞장서서 행한다는 건 그야말로 매국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현재의 대한민국과 비교해 봤을 때 지리적 특성만 남게 되는데 한국인없는 한국을 진정 한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 세미나를 주최하신 여러분들의 자아정체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 이 대한민국 문화 아닙니까? 본인이 만약 이슬람계 국가나 아프리카, 하다못해 북극 근처의 그린란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관과 사고방식을 가졌을 겁니다. 이러한 본인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준 우리나라 문화를 본인들의 손으로 파괴하는 어리석은 일을 지금 여러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슬람의 집단 결속력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됩니다. 종파로 인해 전쟁까지 나는 나라가 이슬람계 국가입니다. 결속력이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이 만나면 흡수되는 건 어느 쪽일까요? 최재천 교수의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에서 외래 문화를 왜 황소개구리에 비유했겠습니까? 지키고자 하는 노력없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이슬람화든 중국화든 우리 문화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는 관광비자가 없어 비즈니스 비자가 아니면 들어가지도 못하는 데에 반해 지금 곳곳에 이슬람 사원이 상호주의도 무시한 채 대한민국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상호주의 없는 정책은 그 균형이 깨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외국인과의 공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화는 영어로 culture고 그 어원인 cultura라는 라틴어는 경작하다라는 뜻입니다. 문화는 그 땅에서 나는 것, 즉 지역적 특성을 강하게 띤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한국식 건물만 있으라는 법은 없지만 하나 둘씩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고 이슬람 타운이 형성되게 되면 이슬람화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영토에 대한 주권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결속력이 강한 집단과의 동화방법은 지금 시행하려는 급진적인 유입이 아닌 점진적인 유입밖에는 없습니다. 음식을 같은 불이라도 얼만큼의 강도로 얼마나 쬐느냐에 따라서 바싹 타버리기도 하고 먹기 좋게 마르기도 하는 등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민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진적인 유입은 당연히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같은 다문화화라도 급진적인 것과 점진적인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한 저는 다문화 정책에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나라와 일제 강점기의 예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나라를 세운 후 만주족은 점점 중국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나름대로 민족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관학을 세워 만주어를 가르치고 관리등용 시험 때도 만주어를 장려했다. 이후 현실적으로 한인 문인들을 지배층에 끌어들인 강희제 시대에 강희자전을 편찬하면서 청나라 황실에서도 중국어의 사용을 허가하게 되고, 그 후에는 서서히 중국화되기 시작했다. 집단 거주지인 만주를 떠나 베이징 등 각지로 옮겨 간 만주족은 적은 인구로 300년 가까이 한족을 지배했지만, 결국은 한족에게 점차 융합되었으며 문화적으로 만주어를 잃어버리고 한족에 거의 동화되었다.
현재 만주어는 사용자가 10명 미만인 소실된 언어로, 쓰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불과 100년 전에 존재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이극로 선생이 조선어의 소실을 우려해 해외로 건너가 녹음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역시 자국 언어가 소실 될 위기에 쳐했던 것이다.』

이 둘의 예시는 강제성을 제외하고는 문화의 파괴, 소실이라는 결말에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문화 정책은 이 두 개의 예시 중 청나라의 사례를 따라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민족 말살정책에는 그렇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세게 비판하면서 왜 우리 손으로 우리 문화를 파괴하는 다문화 정책에는 반대하면 인종차별자 프레임을 씌우고 극우몰이를 합니까?

모순적인 것 아닙니까?

또한 대한민국 문화를 앞에서는 올림픽 등지에서 한복차림으로 부채춤을 추는 등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이 홍보하면서 뒤로는 다문화 정책을 펼쳐 우리 문화를 위축시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민들 인식 때문에 사회 통합이 안된다고 국민들을 몰아가고 실질적으로는 자국민 역차별로 오히려 다문화 정책이 사회 통합을 저해시키는 것. 역시 모순 아닙니까?

이러한 모순점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이민정책을 강요하는데 과연 다양성은 그저 좋기만 한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그 다양성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매해 마다 치르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관련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며 멕시코계 불법체류자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혹자는 미국이 선진국이 된 이유가 다양성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논점 흐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대륙의 풍부한 자원과 전쟁특수로 공업화가 된 나라입니다. 오히려 인종갈등으로 인해 남북전쟁이라는 미국 역사 유일의 본토에서 벌어진 전쟁이라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습니다. 당연히 현재에도 인종갈등으로 인한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화의 흐름 또한 이민정책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데 개념의 구분을 해야합니다. 국제화의 의미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교류가 용이해진 것이지 이민을 개방하는 다문화화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국제화의 흐름이랑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과연 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식인가? 아니면 정부의 정책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문화 정책의 역차별성, 법무부도 인정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외국인은 불체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려 사회적인 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다문화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또 다른 차별이 생성되었다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차별의 정의는 차이를 두어 구별한다는 것인데 다문화라는 그룹이 어휘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된 이상 그것이 차별적 용어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억지스러운 지원을 해주려 정부 스스로 차별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개선을 하려 하는 모습은 좋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도 왜 다문화 인식개선만 강조하는 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다문화 인식개선 홍보대사까지 있을 정돈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대한 선망과 후진국에 대한 멸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이 둘 중 어느 한쪽만 존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맹목적인 자국찬양이 심한 편입니다. 즉, 소위 국뽕이라 불리는 그것이 특징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백인우월주의와 연결이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국뽕이란 것의 기준은 선진국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인정받느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국뽕의 특성은 외국인에게 인정받아야만 그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김치가 맛있다고 해도 외국인이 맛없다고 하면 김치는 맛이 없는 음식이 되어버리는 것 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백인에게 거금을 쥐어주고 한국을 칭찬하는 대사를 읽으라고 시킨 유튜버도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조어 갓양남 갓양녀 동양인이라 죄송합니다라는 뜻의 똥송합

니다. 이렇게 서양인을 찬양하는 용어들이 우리나라에 백인우월주의, 다시 말하면 백인 사대주의가 퍼져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이들 중에는 한국인은 열등하여 백인과 피를 섞어 인종적으로 개량해야한다.라는 매우 저열한 주장이 나올 정도인데 놀랍게도 이는 소수의 주장이 아닌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심심치 않게 보이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을 비웃는 백인들도 더러 존재합니다. 국제망신입니다. 왜 이러한 부분에서의 인식개선은 요구되지 않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만이 시급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사후대책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유입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 유입은 단계적 구조로 이루어져있습니다. 1차 비자 2차 체류 3차 정착으로 이루어지는데 즉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비자심사만 제대로 해도 뒤따라오는 2,3차 단계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체류자가 자주 유입되는 제주도 무비자 제도라던지 유학생 비자 관광비자 난민비자 등을 손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불법체류자가 자주 유입되는 국가는 비자를 발급받기 어렵게 하는 쿼터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 1세계 국가로 그 중에서도 여권 파워 1위로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이를 좋게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만큼 무비자 협약도 많이 체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유입으로 일으키는 각종 문제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를 볼모로 외교협약을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이 토론의 중요한 논점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약자라는 인식을 깨부수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그들은 돈을 벌러 해외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빈민들은 그들의 모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반면 우리 국민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득의 재분배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은 한국어와 문화 교육 정도만 지원해주고 진짜 힘든 사람들만 지원해주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지원이 매우 미흡하여 가수 션씨가 직접 나서서 사적으로 후원을 할 정도입니다. 앞서 언급한 한부모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봅니다.

지원을 다문화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역차별을 유발하는 게 아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진짜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사회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도 선이 있듯이 그 확장판인 국가 간의 관계에도 선이 있습니다. 이민정책을 인료애라는 허울 좋은 이상론으로 포장하지말고 현실적으로 지킬 것은 지켜야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 선을 붕괴하려는 시도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실태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을 납득시키는 건 간단합니다. 자국민은 자국민의 대우를 외국인은 외국인의 대우를 불법체류자는 단속을 하면 됩니다.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을 납득 못할 국민은 없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 즉, 외국인과 자국민의 선을 붕괴시키려했기 때문에 건보료 먹튀가 이슈화 된 것이고 외국인 투표권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애초에 문화의 결정은 그 특성상 자연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이지 정부차원에서 강요할 문제가 아닙니다. 개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할 문제를 정부는 다문화 정책을 이용해 다문화만이 옳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다문화 사대주의라는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세계에서는 무엇이 옳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 사라지고 나타나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다문화 정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취지 자체부터 잘못 되었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지켜야할 것을 지킬 때,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울 때 사람들은 납득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은 채로는 아무도 그 정책을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앞서 말했듯이 우리 정책은 지난 십수년간 외국인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발전해왔고 그로 인한 역차별은 항상 묵과했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제는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것에 비판의식을 갖고 우리 모두 저출산 시대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만 생각해 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 사람이 먼저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전 지구적인 인류애적 사고방식을 개별적인 국가에 적용하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이상은 현실과 다릅니다. 가장은 가족이 먼저고 선생님은 학생이 먼저이듯이 국가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7

대한민국의 경제활력과 사회통합의 제고

강병석 강사(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국민참여단, 서정대학교)

한국은 이주민들의 유입이 광풍적인 속도로 이루어졌다. 1990년 초까지는 5만여 명 정도였는데 2007년에는 100만 명이 넘었고 계속 증가하여 2019년 250만 명을 넘었다. 코로나19사태로 주춤하여 2022년 9월 현재 215만 명 정도 이다. 이는 단일민족인 한국의 특성상 의미가 깊다. 또한, 급속하게 단기간에 늘어난 경우는 다른 전통적인 이민국가에서는 보기 힘들다.

한국이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전환된 이유로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며, 다양한 영향력 때문인데 크게 내부적인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첫째, 국제정세가 공산사회의 붕괴로 탈냉전사회가 되었다. 둘째,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세계의 지구촌화와 국제화이다. 셋째, 신자유국가주의 이다. 넷째, 1980년대 국제 경제의 3저(기름 값 인하, 저금리, 저 달러) 현상으로 인한 경제발전이다. 다섯째,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본과 한국 쪽으로 관심이다. 여섯째,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출입국관리제도의 완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일곱째, 한국과 중국의 수교,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등이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첫째, 1987년 민주화바람에 의한 사회전반의 변화 중에서 노사갈등과 노동자의 노동조합의 강한 활동으로 저임금에서 고임금으로의 구조 변화로 인한 대기업들의 해외이주현상과 고학력의 영향으로 인한 3D업종의 기피현상이다. 둘째, 결혼기피현상이다. 셋째, 출산율의 저하이다. 넷째, 국가의 정책적인 북방정책 강화 등이다. 이렇듯 시대적인 맥락에 의하여 정치. 외교적으로 산업현장의 필요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가 되었고 이들이 유입되었다.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동포,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농촌과 도시빈민청년들의 결혼문제 해결과 노동력 부족 해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주민 유입된 상황에서 유입배경과 맥락, 그리고 이들에 대한 여러 제도들을 보면 유입의 원인들을 볼 수 있고 특징과 문제점을 찾아 낼 수 있다. 또한 이주민 유

입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것들 예를 들어 임금, 사회통합, 일자리 경쟁, 복지지출, 자국민의 이주민들의 수용성, 범죄, 기업의 생산성 등이 발생한다. 이를 통하여 경제활력제고과 내외국인 사회통합의 촉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찾고자 한다.

1. 경제활력제고 대하여

한국의 경제는 그동안 한국경제의 원동력에서 저가의 싼 임금이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러나 더 이상은 싼 임금이 아닌 고임금으로 사업체의 경영이 유지되지 않아서 이들 사업체들이 임금 싼 동남아시아로 이전하였다. 1983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과 한국의 3D업종 기피현상과 고임금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생산인력을 국내에서 구할 수 없어 싼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1983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이 곧 1980년 후반부터 이주민 유입에 가장 큰 이슈는 기업의 생산인구의 결핍이었다. 이때부터 저 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현실이 되어 대안으로 이주민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많은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 이유는 탈 국가주의와 개인과 행복, 경제적인 추구를 최우선하는 풍조이다.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증가추세와 생산활동 인구의 감소는 지속 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추세〉

연도	1980	2000	2020	2040	2060	2070
생산가능인구	2,373	3.370	3,738	2,852	2.066	1,737

출처: 통계청

그리고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어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연평균 36만명 감소, 2030년대에는 연평균 53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동공급 감소 뿐만 아니라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을 약화 역시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인구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경제활려를 위해서 대안은 바로 이주민들의 유입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주민유입을 해야하나 몇 가지를 논하고자 한다.

1).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유입이어야 한다.

그동안의 외국인유입정책은 필요에 따라 땜질식으로 운영하였다. 먼저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확대 과정은 그동안의 제도변화를 통하여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제도는'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연수취업제', '고용허가제도'이다. 결혼이민자들의 결혼중개업소의 과열된 경쟁으로인하여 쇼핑씩 결혼, 위장 결혼, 동포들 대한 매스미디어인한 부정적인 인식, 유학생들의 학교 교육장사로 변한 진정성이 없는 유학과 이탈하여 불법체류증가에 기여, 난민신청자들의 진정성이 없는 특정대상이 많은 신청자들 증가 그러한 결과는 국민들에게 공감을 주지 못해서 이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공하여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통이민국가들은 포인트제도를 도입하여 비자체계를 정리하여 자국민들이 공감하는 포인트제도를 신설하여서 국민들이 정말로 필요하는 이주민들이라는 인식을 주었다. 한국의 포인트제도는 처음에는 쉬게 나중에는 하늘에 별 따기처럼 까다롭고 어렵게 변한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지속성이 결여되고 보편적이지 않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까다로운 점이 있다.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비자는 많은 연구를 하여야 하며,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전통이민국가들에게 1970년 후 반부터 볼 수 있는 특징과 공통적인 패턴은 가족을 동반하는 비자형태 이주였다. 2022년 9월 27일 국회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외국인 우수 인재와 동포에게 취업 제한 완화, 배우자, 자녀 초청 등의 비자특례를 법무부장관이 부여하는 제도이고, 광역비자의 경우 외국인 학생의 부모 등 지역 필요한 인력을 지방주도적으로 선정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비자발급 권한까지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의 이민정책은 외국인을 노동력으로만 봐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족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는 이제는 비자에 가족동반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전통이민국가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민정책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이다. 그러나 그들 자녀들의 문제는 이민정책을 실패를 선언하기도 했다. 비자의 개설에 너무나 많은 집중한 나머지 이후에 관련된 자녀들의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

2). 유학생 비자를 개선하여 생산가능인구에 기여하여 경제활력에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에 유학생을 활용한 비자를 신설하였다. 내용은 외국인유학생(D-2)의 외국인근로자(E-9)활용이다. 외국인근로자 송출국(16개국) 외국인 중 유학(D-2) 체류자격으로 국내 대학(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 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비자제도를 통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유학생들의 비자의 변경이 너무나

어렵게 되어 있어 현실성 있게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 장기비자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한국은 비전문(E-9)들을 유입할 때 EPS시험을 통과하면 서류를 절차를 통하여 유입하여 현장에 투입한다. 이과정에서 특정 국가에서 브로커 문제가 있다.그리고 이주민들이 초기의 언어와 문화로 생활적응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켜 조기적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여 각각 변인들의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간과 내용은 단순한 기초질서 관한 내용을 3시간이라는 아주 짧게 되어 있다. 그리고 변인들마다 참여율이 상이하며 운영방법과 내용이 좀 더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유학생들은 언어문제가 해결되었고 한국문화에 대하여 아주 많이 훈련되어 있어서 유리하고 나이도 젊고 다양하게 적합하여 유용한 점이 많다. 하지만 유학생마다 비자내용이 다르게 책정(D-2-1 전문학사, D-2-2 학사, D-2-3 석사, D-2-4 박사)되어 있다. 유학생 대상을 비전문, 준숙련, 고숙련으로 세분하여 활용해야 한다. 유학생의 불법체류률 증가 및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 대학교도 살리고 생산인력으로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어 유학생을 활용하는 비자 개선이 이루저야 한다. 그리고 대학은 비자장사 교육장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3). 비자 정책을 정비하여야 한다.

외국인정책은 국경관리, 체류관리, 사회통합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경관리는 좁은 의미의 출입국관리 정책으로 비자정책, 비자제도 등이 이에 속하고, 체류관리는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에 대한 등록, 취업 등에 관한 정책, 사회통합은 국민과 외국인의 통합 을 의미한다. 비자정책은 외국인정책 하에서의 국경관리정책과 체류관리정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비자는 하위 범주의 속한다. 그러나 모든 것의 기본은 가장중요하다. 나무는 뿌리가 아주 중요하며 건축에 있어서 기초는 근간을 좌우하기도 하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비자는 가장 기본이고 근간이어서 최상의 정책인 사회통합과 아주관계가 깊다. 첫째로, 이주민들이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 정부 각 부처들이 대상자, 요건과 기준이 반영되어 집행되기 때문이다. 비자를 담당하는 영사의 비리, 비전문성과 형식적인 정책 불응은 비자의 성격을 결정한 결과를 선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렵게 하여 이주민들을 차별할 수밖에 없게 한다. 사회통합에 있어 장애요소 작용하고 있다.

둘째로, 비자에는 선주민들에게 국가의 철학과 목표의식이 분명히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한번 결정된 비자자격에는 인정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차별하지 않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비자의 자격자에게 대우하여야 한다.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삶을 이루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로, 비자에는 분명하게 이주민들에게 투명하게,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여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아 이 땅에 공존하고 싶은 이주민들에게 준비하며 이룰 수 있는 경계선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까다롭고 재량권 남용, 수시로 바뀌는 비자는 혼란을 야기하고 장기체류자 필요한 이 시점에 수정하여 보완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넷째로, 정부가 스스로를 비자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연구하여야 한다. 아프니가스탄의 사태로 한국에 들어 올 때 한국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수용하였다. 정부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선주민들에게 난민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의식을 개선하는 시점이었는데 다른 전통국가들의 대부분은 난민으로 수용했는데 한국정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수용한 것은 스스로가 난민비자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사회통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혔다.

비자 속에는 체류자의 이력과 특성과 신분이 포함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어떤 이주민들을 선택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비자의 종류과 수요가 필요한지 매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물량적인 면이 강조되어 편중된 되어 있다. 필요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통합을 최종적인 목표로 비자정책을 이룰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전통 이민 국가들은 2000년 초,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 후 가장 먼저 한 변화는 비자변경에 자국 언어를 강조하였다. 사회통합을 강조하였다. 또한 비자에 포인트제도를 강화하여 선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비자를 개선하였고, 비자에 관하여 영사가 담당하는 부분을 민간단체들과 거버넌스를 추구하였고, 이주민들이 비자 목표에 대한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완벽하게 사회통합을 이룬 나라는 아직 없다. 비자 속에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내재 되어 있다. 이제부터라도 비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져야 한다.

2. 내외국인사회통합촉진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그 개념에 있어 나라마다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2조에는 사회통합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김혜련, 2014). 그러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조를 통해 사회통합의 개념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국가에서 습득한 문화·가치와 한국의 문화·가치를 접목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 이주민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사회통합이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제정된 정책을 사회통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설동훈, 김명아, 2008). 이렇듯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주요 내용은 쌍방이해와 서로를 존중하고 차별금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통합 촉진을 위하여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원주민과 이주민들간의 자주만나야 한다.

사회통합을 위하여 영국의회의 캔들 보고서는 원주민과 이주민들이 자주 만나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도 쓰고 있다. 독일은 각 나라들의 대표들과 자주 접촉하여 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매스 미디어를 활용하라

최근 영화에서 이주민들을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은 원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주민들에게 세계시민의식를 심어 주는 매스 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여야 한다.

3). 한국어 교육을 의무하여야 한다.

유럽에서 다문화정책의 실패선언한 후 강조한 것이 바로 사회통합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강화한 것은 바로 각국마다 언어정책과 의무화이다. 한국은 초기에 특정단체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실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체 여론은 아니기 이제라도 지속적인 외국인유입은 필수 사항이기에 한국어를 모르면 서로간 소통을 할 수 없어서 지금이라도 한국어 교육 의무화가 이루져야 한다.

4). 한국인들에게도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랑스는 자국민들에게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평생교육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다문화사회전문가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원주민들에게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차 외국인정책(이민정책)에 꼭 담아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전통이민국가의 이민정책의 근간을 바꾼 것이 바로 가족동반비자이다. 동반한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 준비되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아서 나중에 테러, 폭동을 일으켰다. 한국도 지나치게 바로 인구문제로 집중하여 만든 제도에 몰입하여 이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동반한 아이들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여야 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현재 입국한 가족들과 자녀에 대한 제도를 전혀 볼 수 가 없다. 이에대한 논의를 진지하게하여야 한다.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이민청 톺아보기**

3차 경제 활력 제고와 내·외국인의 사회통합 촉진

주최·주관 | 조정훈 의원실 법무부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MRTC

공동주최 | 기동민 의원실, 김형동 의원실, 류호정 의원실, 유상범 의원실, 윤재갑 의원실, 이명수 의원실, 이탄희 의원실